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을 중심으로

2014. 4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머 리 말

다른 나라들이 백여 년에 걸쳐 겪어온 고령화를 우리나라는 20여 년에 걸쳐 압축적으로 겪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요구 받고 있다. 특히 현재 OECD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도전은 심각한 수준이며 노후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는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전 국민이 노후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적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체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목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공적부분의 노력만으로 노후 경제적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 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체계와 함께 사적연금체계를 함께 제공하고 두 체계의 협력을 통해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두터운 대비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공·사적 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보장체계로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노후 경제적 위험의 한 축인 사적연금 중에서도 개인 스스로 노력이 요구되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안해 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4년 4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0
2. 기존연구 및 연구구성 체계 / 13

II. 우리나라 연금제도 및 연금과세체계 / 17

1.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개인연금제도 / 17
2. 연금보험료 공제방식 변화와 세제효과 / 24
3. 현행 연금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소결 / 36

III. 해외사례 / 39

1. 미국 / 39
2. 영국 / 42
3. 독일 / 44
4. 일본 / 45
5. 스웨덴 / 47
6. 프랑스 / 48
7. 주요국 사적연금 과세체계 비교 / 48
8. 소결 / 52

IV. 이론모델과 응용 / 53

1. 이론모델 / 53
2. 이론모델의 현실적 응용 / 59

V. 실증분석 / 64

1. 사용자료 및 기술통계 / 64
2.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과 가입률 변화 추정 / 68
3. 소득계층별 개인연금가입액 탄력성 추정 및 재정효과 분석 / 74

■ 목차

Ⅵ. 개정 세액공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88

Ⅶ. 결론 및 시사점 / 94

| 참고문헌 | / 97

| 부록 | / 99

■ 표 차례

- 〈표 Ⅱ-1〉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 세제 비교 / 20
- 〈표 Ⅱ-2〉 금융기관별 연금저축 비교 / 21
- 〈표 Ⅱ-3〉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 / 22
- 〈표 Ⅱ-4〉 개인연금 가구가입률 추이 / 23
- 〈표 Ⅱ-5〉 근로자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률('11) / 23
- 〈표 Ⅱ-6〉 주요국의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 / 24
- 〈표 Ⅱ-7〉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변천 내용 / 26
- 〈표 Ⅱ-8〉 근로 및 종합소득세율 / 30
- 〈표 Ⅱ-9〉 입구관련 연금세제혜택(400만 원 기준) / 30
- 〈표 Ⅱ-10〉 연금유형별 1인당 보험료 불입액 및 대상자 규모 / 32
- 〈표 Ⅱ-11〉 과세표준소득 규모별 1인당 보험료 불입액 및 대상자 / 33
- 〈표 Ⅱ-12〉 소득유형별 유효세율 / 35
- 〈표 Ⅱ-13〉 과세표준소득 규모별 1인당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조세감면 효과 / 36
- 〈표 Ⅲ-1〉 미국 IRA의 납입단계 세제(2013년) / 41
- 〈표 Ⅲ-2〉 사용자, 근로자, 정부의 기여율 / 43
- 〈표 Ⅲ-3〉 기업형연금제도의 손비처리 한도(연간) / 46
- 〈표 Ⅲ-4〉 주요국 사적연금의 보조금 및 세제지원 여부 / 49
- 〈표 Ⅲ-5〉 주요국의 공·사연금 기여단계 세제비교 / 50
- 〈표 Ⅲ-6〉 주요국의 사적연금 세제비교 / 51
- 〈표 Ⅳ-1〉 연금세제 개편에 따른 총효용 추정 및 변화 분석 결과 / 62
- 〈표 Ⅳ-2〉 연금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수준별 총효용 증가율 비교 / 63
- 〈표 Ⅴ-1〉 재정패널 가구주 및 가구현황 / 64
- 〈표 Ⅴ-2〉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여부별 가구주 및 가구의 기초통계 / 65
- 〈표 Ⅴ-3〉 소득분위별 가구주 및 가구의 기초통계 / 66
- 〈표 Ⅴ-4〉 소득계층별 납세율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 / 67
- 〈표 Ⅴ-5〉 연금가입요인분석(로지트 및 OLS 분석결과) / 69
- 〈표 Ⅴ-6〉 개인연금 납부여부의 한계효과 분석 / 71

■ 표 차례

- 〈표 V-7〉 소득변화율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변화율 / 71
- 〈표 V-8〉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변화율 / 72
- 〈표 V-9〉 모형별 · 납부수준별 연금가입 요인분석(Quantile regression) / 75
- 〈표 V-10〉 개인연금 가입자 소득분위별 가입금액 / 79
- 〈표 V-11〉 소득과 개인연금보험료의 관계 / 80
- 〈표 V-12〉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의 평균과 서열비율 / 81
- 〈표 V-13〉 모형별 · 소득계층별 연금가입 요인분석(Quantile regression) / 82
- 〈표 V-14〉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변화 효과(모형1 기준) / 84
- 〈표 V-15〉 소득계층별 재정(조세지출) 효과(모형1 기준) / 85
- 〈표 V-16〉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조세지출 효과(모형1~3 기준) / 87

■ 그림 차례

〈그림 II-1〉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 / 19

〈그림 IV-1〉 소득계층별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른 후생변화 효과 비교 / 58

〈그림 V-1〉 개인연금납부액 분위별 설명변수의 계수 값(탄력성) 비교 / 77

〈그림 V-2〉 개인연금 가입자의 소득분위와 가입액 간의 관계 / 79

〈그림 VI-1〉 독일의 가처분소득 수준별 연금상품 가입률 / 90

〈그림 VI-2〉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연금 가입액에 미치는 영향 / 92

Tax treatment for the private pension

As increasing longevity risk, providing social security is getting more important role for governments. To protect from the financial risk in old age, the government designs and provides three pillars of pension scheme to guarantee stable pension benefits for individual.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tax treatment for the private pension which is the third pillar of the pension scheme.

Our theoretical model estimates that when the government changes tax treatment for th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that will increase disposable income and incentive to have more savings for low income households.

We also verify our theoretical estimations with Public Financial Panel Data using quantile regression that shows the consistent results with the estimations. The data analysis also show that low income households have larger income elastic of demand for the private pension than rich households do.

Based on our research, we conclude that changing tax treatment will be an effective policy to fertilize the private pension for the low income households.

요 약

I. 서론

-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임.
 - 고령화를 대비한 건강리스크와 재무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OECD 기준 노후 빈곤율은 45% 이상인 세계최고수준으로 노후의 재무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정부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음.
 -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음.
 - 국민연금이 목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40% 정도이나, 현실적으로는 2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는 공적연금(1층)에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¹⁾(3층)을 더한 3층 연금체계를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퇴직연금은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연금은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적 연금이라고 할 수 있음.

1)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즉시연금 그리고 변액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지칭한다.

- 각 층별 노후보장 체계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공적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조세로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연금납입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지원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2013년 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정부는 2014년부터 기존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
 - 세액공제란 소득세율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임.
 -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제혜택의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세제개편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영향 분석과 향후 정책 대안을 논의 하고자 함.

II. 우리나라 연금제도 및 연금과세체계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포괄하는 특수직역연금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으로 구분됨.
 - 사적연금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과 일반 국민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음.

- 공적연금은 보험료 납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개인연금중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400만 원(퇴직연금 본인 부담분 포함)을 한도로 소득 공제(2014년 이후 세액공제)가 적용됨.
 -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400만 원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세제지원에 힘입어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적립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 도입 첫해인 1994년 적립금규모는 2조 5,000억 원에서 2011년에는 적립금규모가 177조 원에 이름.
- 세제적격 개인연금 적립액 규모는 크게 성장하는데 반해 가입률은 소득수준별로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근로자 연금저축(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은 12%(국세통계연보, 2011년 기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소득수준별로는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률이 2% 정도인데 반해 8천만 원 이상은 63% 정도로 소득수준별로 가입률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 및 가입액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은 역진성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한계세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최대 24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반면 최고 과세표준 소득 수준인 3억 원(2014년 이후 부터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최대 152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음.
 - 이러한 역진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개인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세액공제로 전환 시 저소득층에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좀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소득계층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과세표준 1억 이상 소득계층은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분석됨.

Ⅲ. 해외사례

- OECD 국가들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체계를 기여단계, 운용단계, 급여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미국에서 적격퇴직연금(401k)의 경우 EET(Exempt -Exempt -Tax system)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개인연금인 전통형 IRA(EET)와 Roth IRA(TEE)의 경우와 상이하게 운영됨.
- 영국의 적격퇴직연금의 경우도 EET 방식으로 분류되며,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NEST 개인연금의 경우 일부 저소득계층에 보조금 지급과 함께 EET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독일은 직접보험 및 연금펀드 형태의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EEE 방식이 적용되며, 2002년부터 실시 중인 리스터 연금의 경우 연금가입 및 출산 보조금과 함께 EET 방식이 적용됨.
- 일본은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ETT(한시적으로 운용단계에서 비과세) 방식이 적용되지만 기여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도 존재함.
 - 개인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EET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스웨덴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EET 방식이 적용되지만, 기여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없는 강제가입 사적연금인 프리미엄연

금(Premium pension)이 존재함.

- 프랑스는 적격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여단계와 급여단계에서 각각 소득공제혜택과 소득세를 과세함.

■ 주요국 공·사연금 과세체계 비교와 시사점

- 퇴직연금의 근로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독일(직접보험),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독일과 일본에서 일부의 퇴직급여제도에서는 부분적인 보조금 혜택을 제공함.
-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노르웨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독일의 리스터 연금 및 영국의 NEST 제도의 경우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보조금을 제공함.
- 임의 가입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반면, 독일은 소득수준별로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가장 대표적인 정부지원의 사례로 평가됨.
-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독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IV. 이론모델과 응용

-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개인의 특성을 만족하는 효용함수를 가정할 때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개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됨.

- 일을 할 수 있을 때(근로기)와 일을 하지 않을 때(은퇴기)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자원을 배분함.
 -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해 가치분소득이 증가하여 은퇴기를 위한 저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해 가치분소득이 줄어들어 은퇴기를 위한 저축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 콥-더글러스(Cobb-douglas) 효용함수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각 계층별 효용의 변화를 모의실험(Simulation)해 본 결과, 저소득층은 효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고소득층은 효용이 소폭 하락하였음.
- 과세표준 3,000만 원 이하계층은 효용이 20% 정도 증가 하였으나, 3억 원 초과 계층은 6%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V. 실증분석

- 제도의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함.
- 전체 4,500여 개의 관측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숫자는 361개로 가입률은 8% 정도이고 가입액의 평균은 약 247만 원이었음.
 - 그 밖의 기술통계로는 평균나이는 약 50세 였으며, 혼인 가구주 비율은 약 70%, 임금근로자 비율은 약 68%, 그리고 개인소득의 평균은 연간 약 3,300만 원, 보유 금융자산의 3,7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소득계층에 따라 납세율과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의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은 1.1%인데 반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계층의 가입률은 23.4%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납세율은 10% 정도 인데 반해 고소득층의 납세율은 64%로 세제를 통한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요인분석을 로짓모형을 이용해서 실행한 결과 소득수준이 개인연금가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소득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가입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소득이 1% 증가할 때 0.067%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세액공제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률이 약 0.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가입액변화의 탄력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따른 개인연금 납부액의 탄력성은 중산층이 가장 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개인연금 가입액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층은 중산층인 것을 보여줌.
 - 고소득층의 경우 가처분소득 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액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어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고소득층의 이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제도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층에 약 76억 원, 중산층에 약 72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고소득층에서 약 1,470억 원의 지원이 줄어들어 총 675억 원의 재정이 절약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VI.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과거 정책에 비해 세제지원의 역진성이 줄어들어 중·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 및 가입액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됨.

- 가입률측면에서 중·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 가입률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입액 측면에서는 중산층의 가입액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책제안으로는,

-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개인연금 가입률 및 가입액 증대를 위한 세액공제율의 차등화가 필요함.
- 납세규모가 매우 적어 세제혜택으로는 가입유인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
- OECD의 권고수준인 개인연금으로부터의 소득대체율 10%를 달성하기 위한 공제액상한선(400만 원)의 상향조정(예,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함.
- 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인한 잉여재원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

VII. 결론

- 공적연금 재정문제를 고려할 경우 머지않아 닥칠 초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사적연금 발전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의 연금세제 개편은 사적연금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재정문제에 대응하여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 노후보장의 가장 바람직한 주체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정책이 요구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젊음을 잃는다는 감정적 아쉬움뿐만 아니라 그것에 수반되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 문제를 낳는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육체적 노동력이 약해짐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일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노년 이후 가장 걱정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경제적 우려를 들었다.²⁾ 특히나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를 넘어서 세계최고 수준이고, 인구의 고령화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어서 2026년 인구의 20%가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술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루어낸 평균수명의 향상이라는 결실은 역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으로 다가 올 수 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면 이는 비단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자 0층에 기초노령연금, 1층에 국민연금(공적연금), 2층에 퇴직연금 그리고 3층 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 제도를 기획하여 운용 중에 있다. 기초 노령연금은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전액 조세로 재원이 충당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의무가입을 통해 모든 국민의 노후준비를 의무화하고 의무가입으로 인한 고

2) 보험연구원(201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의 세대 내 재분배 그리고 미래세대로부터 현재세대로의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을 가능하게 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와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과 의무가입 제도를 통해 전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목표하고 있는 노후의 소득대체율은 40%³⁾인 것을 감안한다면 노후의 재무적 위험을 국민연금만으로 대비하기는 충분치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의 재무적 위험에 대해 좀 더 두터운 대비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다층연금의 가장 위층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적연금 그 중에서도 개인연금이다.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자발적인 연금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개인연금의 자발적 가입 특성은 국민연금과 다른 몇 가지 파생적 다른 점들의 이유가 되는데 그 첫째는 가입자가 기여한 개인연금 보험료의 총액의 가치와 가입자가 생을 마감하는 기간까지 수령하게 되는 연금의 총액의 현재가치가 같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개인연금은 평균적으로 개인이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대 내는 물론 세대 간에도 재분배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기여한 만큼 수령하고, 재분배기능 없이 노후의 재무적 위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연금은 하나의 상업적 보험상품(Commercial Good)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적보험을 통한 노후보장의 확충은 초고령사회에서 공적연금만

3)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납입기준으로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40년 동안 일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실질 소득대체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는 고령사회의 노후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개인연금의 확충은 공적연금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으며, 장래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갑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positive externality)가 존재한다. 교육 등 개인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사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같은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세제지원 중에서도 기여단계에서 일부 소득공제(Exemption)를 기여금의 운용단계에서 운용수익에 대한 면세(Exemption)혜택을 제공한 후 연금수령 단계에서 수령액 중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공제 후 소득세를 부과(Taxation)하는 제한적 EET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EET 형태의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 중 개인연금 기여단계의 세제혜택은 혜택이 즉각적이며 불확실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제혜택보다 확실하다는 부분에서 개인에게 커다란 유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한도를 정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011년부터 400만 원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통한 개인연금활성화 방안은 경제주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비판의 핵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판으로는 지원의 역진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소득공제 방식은 전체 소득 중 해당 항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높은 한계세율 및 실질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은 높은 절세혜택이 큰 반면, 소득이 낮아서

세율이 낮은 계층은 절세 혜택이 적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다. 두 번째 비판으로는 정책의 효율성⁴⁾에 대한 비판으로 세제 혜택에 경제주체들이 총량적으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이나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노후 대비에 도움이 필요한 중·저소득 계층보다 지원의 필요도가 덜 한 고소득 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3년부터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방법을 과세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방식에서 정부가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기여금의 일정한 비율을 정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계획 중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변화로 인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의 변화뿐 아니라 그에 따른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정부 조세지출 역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가처분 소득의 변화 및 개인연금 수요의 변화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소득계층별 경제주체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원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및 연구구성 체계

연금과세체계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연금제도별로 보면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퇴직·개인연금으로 구분하여 과세효과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⁵⁾ 이는 공적연금이 가지는 특성과 사적연금이 가지는 제도적 특성이 연금과세를 통해 다르게 구현될 수 있다는 측

4) 본 고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 혹은 계층에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효율성이라 정의하고 사용하기로 한다.

5) 기존연구는 강성호 외(2012)의 연구결과를 수정 보완하되, 추가적인 기존연구를 보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면에서 공사연금과세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기존과 같이 유지되고 사적연금인 퇴직·개인연금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제도별 특성에 따른 연금과세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 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효과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과세체계 개편 이후 세제 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요섭(2010)의 연구에서는 세제효과를 고려할 때의 수익비 차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보험료 소득공제로 인한 보험료 순부담률은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되고,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도 세제의 수익비 증대효과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요섭·이정화(2008)에서는 국민연금의 납부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때의 소득재분배 효과 차이를 분석한 바 있는데 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보험료 납부단계와 연금수급시점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경감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황규영(2010)의 연구에서는 '07년도 개정 국민연금에 대해 과세 논리성, 정합성 측면에서 과세효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07년 개정 국민연금법에 의해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 과세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낮은 가입률의 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에 있어서 연금과세 체계 개편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김인식·류건식·김대환(2011)은 퇴직연금 세제체계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현행 EET 방식 중심으로 연금세제를 개편하되 다른 연금세제와 분리된 체계를 설정하거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유형별로 공제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연령 등 다양한 특성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하자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김수성(2010), 김용주 외(2008) 등의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 불합리한 세제혜택이 낮은 가입률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 현행 개인연금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공제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차등화하는 방안,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성권(2008)은 연금의 과세체계를 불입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과세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연금저축으로부터의 수령액에 대해서는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Pablo Antolin 외(2004)에서는 향후 인구구조와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OECD 17개 국가에 대해서 세제 특혜(tax-favoured)가 있는 노후를 위한 저축(연금)제도(retirement saving regimes)의 재정적 비용과 수익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분석결과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연금수급, 인출(withdrawal)이 일어나 재정적 수입이 급속히 증가할지라도 여전히 세제 특혜제도의 재정적 비용은 상당하며, 만약 세제 특혜제도가 추가적인 사적저축을 촉진시킨다면 그 재정적 비용은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노후저축은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고, 공적연금 급여축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독려하는 구조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세제혜택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John B. Shoven · David A. Wise(1996)의 연구에서는 연금수급과 부동산에 투자된 연금 자산에 대한 한계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연금 수급 시 한계 세율은 61.5%, 부동산에 투자된 연금자산의 경우 92~99%의 한계세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고소득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국내 · 외적으로 적절한 연금과세제도의 모형,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문헌의 경우 연금 세제와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등 사적연금 세제 개

편에 따른 효과 분석을 논의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기존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차별화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개편된 연금과세체계인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 이론모형과 실증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세제적격 개인 연금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누진적 세율체제로 인한 세제혜택의 역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세지출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연금 보험료에 적용하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둘째, 공제방식의 변화가 소득계층별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기 위해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연금 제도 및 연금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2013년 연금과세체계 개편을 앞두고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 시 나타날 효과를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연금보험료 공제제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보험료 공제에 대한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한 간단한 경제적 효과분석(예, 사회적 효용 변화 등)을 수행한다. 제5장에서는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탄력성을 분석함으로써 소득계층별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제6장에서는 개정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고, 제7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한다.

Ⅱ. 우리나라 연금제도 및 연금과세체계

1.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개인연금제도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연금제도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연금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개인 연금제도와 연금과세체계는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구성요소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형식적으로 다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 중 연금소득을 중심으로 보면 3층의 연금소득보장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Ⅱ-1〉을 보면, 연금소득보장체계는 1층의 공적연금과 2, 3층의 사적연금으로 대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공적연금은 직역의 특수성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1960년에, 사학연금은 1975년에, 별정우체국 연금은 1991년에 각각 해당 직역의 종사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등 공적연금은 모두 도입 시점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경활자를 제외한 경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하겠다. 2012년 말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는 약 2,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적연금은 근로자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되며, 퇴

직연금은 피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연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 이유로는 가입의 강제성이 적다는 것인데, 퇴직연금의 경우는 그 강제성이 강화되어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은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이 법정 강제화되어 있어 준공적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여서 실제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인식보다는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상품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또한 가입 및 유지가 그 만큼 많거나 지속적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세제가 갖는 고유한 특성인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과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무기여 공적연금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0층에 포함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도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분석내용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⁶⁾

6) 기초연금에 대한 이슈는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2013)을 참고하거나, 국민연금연구원(2013)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II-1〉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

사적 연금	3층	개인연금('12. 6월 13,154천 건)		
	2층	퇴직연금 ('12. 12월 438만 명)	특수직역연금* ('12. 6월, 151만 명)	
공적 연금	1층	국민연금 ('12. 12월, 2,033만 명)		
	0층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12. 12월, 지급대상 386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근로자	자영자	기타 공무원 등

주: 1) () 안은 각 연금의 가입자 수(단,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연금보험을 합산한 건수).

2) *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성되며, 군인은 '11년 기준으로 산출되어 합산됨.

자료: 보험연구원 내부자료(2013).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개인 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비과세) 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흔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이고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에 해당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동 구분이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지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납부 시 연금보험료에 비과세(소득공제)가 되지만 연금수급시점에는 보험료 소득공제에 상응하여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마찬가지로 세제비적격 개인 연금은 납부 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되지 않지만 연금수급 시 연금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여 후자를 비과세 개인연금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세제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 세제 비교

구분	보험료	중도해지 시			일시금	연금
	납입 시	~5년	5~10년	10년~	수령 시	수령 시
연금저축 (세제적격)	소득공제 혜택	기타소득세(22%)			기타소득세 (22%)	연금소득세
		해지가산세 (2.2%)	—	—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소득공제 혜택 無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 면제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 11. 14), 「연금저축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오진호·임두빈·전용일(2013) 재인용.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공적연금이 노후의 기본적 소득보장을 목표로 한다면,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노후소득의 적정 및 추가적 보장을 목적으로 1994년에 세제적격(보험료 소득공제) 형태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개인연금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처분소득 제고와 과세 형평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2013년 현재 연간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 원(퇴직연금 본인부담분 포함)이며,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주요 요건을 살펴보면,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연간 저축한도는 1,800만 원(퇴직보험 포함)이며,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이러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유형을 보면,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의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2〉 금융기관별 연금저축 비교

구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상품형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
납입방식	매월 정해진 금액 의무납입		1만 원 이상 자유납입	
수수료 (사업비)	매월 납입 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		적립액에 비례하여 부과	
연금형태	종신, 확정, 상속형	확정형(5~25년)	확정형(최소 5년 이상)	
원금보장여부	보장	보장	보장	보장불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불가

주: 연금저축 취급기관은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투자회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및 중앙회(생명보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생명공제).

자료: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2. 4. 4),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개인연금 자산규모(적립금)를 살펴보면,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도입 첫 해인 1994년 적립금 규모는 2조 5,000억 원 수준이었으며, 1996년 10조 원을 돌파하여, 2001년에는 비과세 개인연금(세제비적격)과 합산하여 47조 원까지 증가하였다. 2007년에 108조 원의 개인연금 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약 5년 만에 170조 원을 초과하는 시장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표 II-3〉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

(단위: 십억 원)

연도	세제적격연금(A)					세제비 적격연금 (B)	개인연금전체 (A+B)
	생보	손보	은행	자산 운용	기타		
1994	634	250	1,097	568	0	—	2,548
1995	1,786	699	2,143	1,545	0	—	6,173
1996	3,952	1,309	3,376	2,076	0	—	10,713
1997	5,611	1,751	4,549	1,461	0	—	13,373
1998	6,710	2,045	5,024	1,203	0	—	14,981
1999	6,990	2,152	5,458	1,339	0	—	15,938
2000	9,266	2,779	6,528	1,020	0	—	19,593
2001	10,992	3,272	7,540	1,081	0	24,654	47,539
2002	12,763	3,763	8,406	1,094	0	28,629	54,655
2003	14,050	4,239	9,238	1,071	0	34,377	62,974
2004	15,304	4,616	9,995	1,090	0	40,100	71,105
2005	16,943	5,091	10,604	1,182	0	44,347	78,167
2006	17,722	5,480	11,056	1,271	1,957	49,602	87,088
2007	20,158	6,138	11,238	1,697	2,463	53,139	108,045
2008	22,837	7,057	11,014	2,290	3,080	54,242	117,239
2009	25,927	8,360	10,856	2,924	3,851	83,870	135,788
2010	29,839	10,274	11,320	3,552	4,629	98,380	157,994
2011	33,814	13,074	11,765	3,923	5,583	109,041	177,200

주: 1994~2008년도 자료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노동부자료를 재구성한 이순재·김현수(2009)자료를 재인용, 2009년도 이후는 금융감독원의 개인연금관련통계 공시자료를 합쳐 재구성함. 1)~2) 수치는 개인연금 전체자료에서 세제적격 연금을 차감한 결과임.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은퇴와 연금(2012. 1), No. 58; 오진호·임두빈·전용일(2013) 재인용.

개인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현재 13,154천 건으로 총 인구대비 약 26.3%로 추정된다(보험연구원 내부자료, 2013). 유의할 점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연금저축 통계를 인(人)별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가입률을 총인구수 대비 가입건수로 산출한 것이므로 1인당 2건 이상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수는 있다.⁷⁾

7) 추정식: 13,154천 건(6,315+6,839천 건)*50,004천 명**

* 금융기관별 연금저축 가입비중('12. 6월 기준): 보험사(생·손보사)가 전체(6,315천

한편, 개인연금 가구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2년 21.6%로 2007년 21.2%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근로자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낮아 소득계층 간 가입률의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4〉 개인연금 가구가입률 추이

(단위: %)

구분	'07	'08	'09	'10	'11	'12
가구가입률	21.2	18.7	21.0	20.2	21.2	21.6

주: 보사연 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연금전환 가능 종신보험 포함)이 포함된 개념으로 가구 단위로 분석한 것임.

자료: 금감원(2010), 사적연금시장 현황; 금융위(2012), 보도자료(4. 4); 보건사회연구원(2013), 한국복지패널 보고서; 보험연구원 내부자료(2013) 재인용.

〈표 II-5〉 근로자 소득계층별 연금저축¹⁾ 가입률('11)

(단위: %)

소득 수준	2천만 원 이하	2~4 천만 원	4~6 천만 원	6~8 천만 원	8천만~1억 원	1억 원 초과	전체
가입률	2.0	23.6	46.1	59.0	63.6	56.9	12.0

주: 1)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률을 의미, 국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태조사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보험연구원 내부자료(2013) 재인용.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08)로 35.1%였고, 독일('08) 29.9% 순이었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2.2%('09) 수준이었다.

건의 80.4%(생보사 46.7%, 2,947천 건, 손보사 33.7%, 2,125천 건)를 차지하였으며, 은행 15.4%(975천 건), 자산운용사 4.2%(268천 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2. 10. 16).

* 생보사 연금보험 가입건수: 6,839천 건('12. 6월 기준,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2012. 8.).

** '12년 기준 추정인구수: 50,004천 명(통계청 보도자료, 2012. 6. 27).

〈표 II-6〉 주요국의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단위: %)

구분		미국 (’09)	영국 (’09)	독일 (’08)	오스트리아 (’09)	캐나다 (’08)	한국 (’09)
임의 가입	개인연금	24.7	18.1	29.9	25.7	35.1	12.2
	퇴직연금	32.8	49.1	32.2	12.1	33.9	18.8
	소계	41.1	—	—	—	52.6	—

주: 1) 생산활동인구(16~64세) 대비 가입률(인구 기준 가입률이므로 실태조사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2011), p. 173을 재구성; 보험연구원 내부자료(2013) 재인용.

2. 연금보험료 공제방식 변화와 세제효과

여기서는 최근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과세방식이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두 공제제도의 특성을 비교하고 실적치로 산출된 국제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 방식에 따른 세제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특성 비교

우리나라 소득세법 체계에 따르면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9가지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개인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는 9가지 과세대상 소득 중 연금소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연금보험료 혹은 연금소득의 일부를 소득공제함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을 낮추게 되어 세제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세제혜택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엄밀히 말하면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소득

공제는 연금보험료(납부 시)와 연금소득(급부 시)에 대한 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과세체계의 변화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세제 개편 전까지 공·사 연금과세체계는 분리되어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었으나, 세제 개편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 체계로 전환(TEE→EET)함으로써 공사연금 동일 과세 체계가 되었다. 즉, 2002년 이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연간 총연금수령액(공·사적연금 포함)에서 일정 연금소득을 공제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부 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금소득 과세 체계는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Exemption), 운용단계 수익 비과세(Exemption), 연금수령 시 과세(Taxation)하는 EET 방식이 일반적인 추세이다.⁸⁾ 사적연금은 2001년, 공적연금은 2002년부터 연금수령 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공사연금은 원칙적으로 EET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EET 방식은 공적연금에는 온전히 적용되지만 사적연금에는 TEE와 EET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은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되나 사적연금은 공제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본인부담분의 합산액) 이상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공제된다.⁹⁾ 또한 사적연금 중 EET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한정되며, 비적격 연금형태인 변액연금과 즉시연금은 TE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8)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은 EET 방식이고, 스웨덴, 일본, 호주 등은 운용단계에서 부분적 과세가 추가되는 ETT 방식의 과세 체계이다.

9) 비공제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서 비과세된다. 단,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환급(해지금액의 22%), 해지가산세(불입누계액의 2%)를 부담한다.

〈표 II-7〉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변천 내용

구분			소득공제 내용		
			2000. 12. 31 이전	2001년	2002년 이후
공적 연금	국민 연금	직장가입자	공제 불인정	본인 부담액의 50%	본인 부담액의 100%
		지역가입자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 원)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특수직역 연금		공제 불인정		
퇴직 연금	법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¹⁾		2006. 1. 1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05. 12. 1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본인부담액 전액 (2013년 현재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		
개인 연금	국내거주자		연간 불입금액 중 2000년 까지는 40%(한도 72만 원), 2001년 이후는 100%(한도 240만 원), 2013년 현재 퇴직연금 본인부담분과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		

주: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부담금을 말함.

자료: 강성호·정원석(2013).

이러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보험료 공제효과를 흔히 알고 있는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을 연간급여액(A)이라고 하고 여기에 비과세에 해당하는 소득(a)을 빼면 ① 총급여액(B)이 산출된다. 이러한 총급여액은 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첫 출발이 되는 소득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b)를 빼면 근로소득(C)을 산출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개인연금과 같이 특정 제도 혹은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형태를 연금보험료와 비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연금보험료공제(e_1)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하고, 비연금보험료공제(e_2)는 인적공제,¹⁰⁾ 특별공제,¹¹⁾ 기타공제¹²⁾를 포함하

10)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으로 구성된다.

는 공제라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에서 연금보험료 및 비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소득(D)이 산출된다.

과세표준(D)에 기본세율(t_i)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d)을 적용하면 현행 우리나라 과세체계에서의 세액이 결정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자의 항목별 공제액 및 산출액 계산 과정〉

- ① 총급여액(B) = 연간급여액(A) - 비과세소득(a) (1)
- ② 근로소득(C) = 총급여액(B) - 근로소득공제(b) (2)
- ③ 과세표준(D) = 근로소득(C) - 연금보험료공제(e_1) - 비연금보험료공제(e_2) (3)
- ④ 산출세액(F) = 과세표준(D) $\times$ 기본세율(t_i) (4)
- ⑤ 결정세액(T) = 산출세액(F) - 세액공제 및 감면(d) (5)

이러한 연말정산 식을 활용하여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른 과세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위 결정세액(T)을 근로소득(C), 연금보험료공제(e_1), 비연금보험료공제(e_2), 기본세율(t_i)과 세액공제 및 감면(d)으로 구성된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6)과 같다.

$$T^i = [C^{i-}(e_1^i + e_2^i)] \times t^i - d^i \quad (6)$$

$$T_a^i = [C^{i-}(e_a^i + e_2^i)] \times t_a^i - d^i$$

$$T_b^i = [C^{i-}(e_b^i + e_2^i)] \times t_b^i - d^i$$

$$\text{보험료 공제효과: } \nabla T^i = T_a^i - T_b^i = -(e_a^i - e_b^i) \times t^i \text{ (if } t_a^i = t_b^i = t^i)$$

지금은 근로소득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산식으로 전환하여 공·사적 연금보험료 공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즉,

11)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공제 등이 포함된다.

12) '기타공제'에는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개인연금 보험료 납부($e_a^i > 0$)에 따른 i 가입자의 결정세액을 T_a^i 이라고 하고 동 가입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e_b^i = 0$)의 결정세액은 T_b^i 라 할 때, 한계세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t_a^i = t_b^i = t^i$) 개인 i 의 개인연금 보험료의 소득공제효과(∇T^i)는 $-e_a^i \times t^i$ 로 나타난다. 즉, 공제액과 세율에 의해 소득공제효과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현 정부는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세수확보와 과세 형평성을 달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기존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세제 개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사적연금보험료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둘째, 연금계좌에서 사용한 노후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며, 셋째, 일시금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라고 하겠다.

연금세제 개편 과정에서 공적연금보험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고, 사적연금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되 공제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400만 원으로 하고 세액공제율을 모든 가입자에게 12%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기본 20%, 부득이한 경우 15% 세율)¹³⁾으로 과세 하던 것을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3~5% 원천징수 한다.¹⁴⁾ 연금 외 수령 소득(일시금)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 20%,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15%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각각 15%, 12%로 인하한다는 것이다.¹⁵⁾

2013년 연금세제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 및 유지 행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13)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14) 기획재정부(2013. 8), 「201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p. 46.

15) 2012년까지 퇴직일시금 수령 시 전부(퇴직금, 자기불입금, 운용수익) 퇴직소득 과세였으나, 2013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를 구분하고 있다(개정 소득세법안, 제129조제1항).

예상된다. 연금저축 보험료의 12%를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공제하므로 소득 공제 방식에 의해 12% 이상 적용받던 가입자(고소득층)는 가입과 유지에 불리하고, 그 이하에서 적용받던 가입자(중·저소득층)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소득층은 신규가입 유인이 줄어들고 납부금액도 낮추게 될 것이며, 저소득층은 반대의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노후의료비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연금세제 개편은 노후의료비 부담 완화 및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일시금에 대한 적용세율을 경감하는 연금세제 개편은 일시금 수령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 부담 완화 조치로서의 의의는 존재하나,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시금 선호를 부추길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효과분석

여기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에 따른 세제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소득공제 방식에 의하면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높은 한계세율 적용으로 인해 역진적 세제혜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세법상 적용되는 구간별 한계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최소 6% 세율에서 최대 38%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8〉 근로 및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소득 구간	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90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760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주: 2013년 말 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과세표준소득 구간의 최고 소득금액은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됨.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2014(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 소득공제(입구세제방식)에 따른 연금의 한계세제 혜택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표 II-9〉과 같다. 이에 의하면 동일한 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1천 2백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최대 24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대 15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어 약 6.3배의 소득감면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한계세율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유효세율¹⁶⁾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보다는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표 II-9〉 입구관련 연금세제혜택(400만 원 기준)

과세표준	~1.2천만 원	~4.6천만 원	~8.8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소득세율	6%	15%	24%	35%	38%
세제혜택	최대 24만 원	최대 60만 원	최대 96만 원	최대 140만 원	최대 152만 원

자료: 기재부(2012).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행 연금세제 개편에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본인부담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하게 12%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3년

16) 자신의 소득대비 실제로 부담한 세금의 비율이다.

연금세제 개편 효과를 분석하면, 저소득층은 기존의 소득공제에 비해 유리하게 되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만큼 연금보험료 세제효과의 역진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유효세율이 세액공제율을 적용 시 나타나는 세율(12%)보다 높아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정태적 조건 하에서라면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어떤 세율로 분석할 것인지에 따라 그 세제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달라진다. 앞에서와 같이 한계세율 방식으로 하면, 한계세율에 해당하는 구간에 자신의 개인연금 보험료 공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면 보험료 소득공제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효과는 종합소득 측면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다른 소득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연금보험료 공제 외에 다른 공제(예,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를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놓고 효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체 효과는 모두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형태가 되므로 과대 추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현실에서 산출되는 평균세율인 유효세율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세부적인 분석에 앞서 동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국세통계연보의 기본적인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국세통계연보(2012)를 활용하여 연금유형별 소득공제 대상자 중 가입자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공적연금(13,583천 명), 퇴직연금(29천 명)¹⁸⁾, 개인연금(3,247천 명)은 각각 80.6%, 0.2%, 19.3%로 나타났다. 연금유형별 1인당 보험료 연간 평균공제금액은 공적연금 1,331천원, 퇴직연금 2,030천원, 개인연금 2,256천 원으로 개인연금 보험료 공제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개인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에 비해 고소득자 중심으로 가입하고 있어 소득공제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7) 아래의 분석결과는 강성호·정원석(2013)을 재구성한 것이다.

18) 이하 퇴직연금은 가입자 본인부담분(소득공제대상분)이 존재하는 자만 대상으로 분석된다.

〈표 II-10〉 연금유형별 1인당 보험료 불입액 및 대상자 규모

(단위: 천 원, 천 명)

연금유형 소득자 유형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액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종합소득자		1,492	2,408 (77.5)	2,367	3.45 (0.1)	2,470	694 (22.4)
근로 소득자	과세 대상자	1,442	9,234 (78.8)	2,044	23.22 (0.2)	2,223	2,459 (21.0)
	과세 미달자	606	1,941 (95.3)	1,377	2.27 (0.1)	1,539	93 (4.6)
전체		1,331	13,583 (80.6)	2,030	28.94 (0.2)	2,256	3,247 (19.3)

주: 1) 국세통계연보(2012)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2)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일부가 중복될 수 있어 전체 통계치는 중복성이 존재하는 값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강성호·정원석(2013).

과세표준소득 기준으로 공적연금은 3천만 원 이하, 퇴직연금은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개인연금은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불입액과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6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액이 다른 연금에 비해 높고, 1억 원 초과 소득수준에서는 퇴직연금 불입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11〉 과세표준소득 규모별 1인당 보험료 불입액 및 대상자

(단위: 천 원, 천 명, %)

과세표준 소득구간	연금유형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액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0원	1,112	462 (3.4)	2,312	0.35 (1.2)	2,269	85 (2.6)		
3천만 원 이하	801	7,664 (56.4)	1,421	7.36 (25.4)	1,888	617 (19.0)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903	3,668 (27.0)	1,975	8.24 (28.5)	2,192	1,146 (35.3)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497	1,339 (9.9)	2,271	8.85 (30.6)	2,425	977 (30.1)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2,440	415 (3.1)	2,669	3.99 (13.8)	2,555	395 (12.2)		
3억 원 초과	2,640	34 (0.3)	3,181	0.16 (0.5)	2,850	27 (0.8)		
합계	1,331	13,583 (100.0)	2,030	28.94 (100.0)	2,256	3,247 (100.0)		

주: 1) 국세통계연보(2012)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2) () 안은 유형별 대상자 비율임.

자료: 강성호·정원석(2013).

이제 위 국세통계연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3년 연금세제 개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공제 전후 효과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보험료 불입액, 유효세율, 보험료공제율을 활용하여 소득수준별로 개인연금 보험료의 세제혜택 변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료 불입액과 유효세율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각각에 대해 2011년 기준으로 연금유형별, 소득구간별로 산출할 수 있으며, 유효세율은 결정세액/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다. 2013년 세법 개편에 따른 사적연금보험료 공제율은 12%로 제안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다. 소득수준별 개인연금 보험료의 세제혜택 변화 효과는 세제 개편 전후 조세감면액의 차이로 산출할 수 있다. 보험료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보험료 불입액에 유효세율을 곱하고,¹⁹⁾ 보험료 세액

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보험료 불입액에 보험료공제율(12%)을 곱하여 산출한다.

- 소득공제 방식 조세감면액 = 소득구간별 보험료 공제대상 불입액 × 유효세율
- 세액공제 방식 조세감면액 = 소득구간별 보험료 공제대상 불입액 ×
보험료공제율(12%)
- ※ 유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소득수준별 개인연금 보험료 불입액은 앞의〈표 II -11〉에서 산출되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유효세율을 산출하고자 한다.

소득자 유형별로 유효세율(2011년 기준)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자 18.0%, 근로소득자 11.0%로 나타나 종합소득자가 약 7.0%p 높게 나타나고 전체 유효세율은 13.4%로 산출되었다. 이를 개편 후의 세액공제율 12%과 비교해 보면, 종합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근로자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근로자(종합소득자 +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납입분에 대한 세부담은 약 1.4%p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면, 전체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는 4.8%,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7.3%,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2.0%,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1%, '3억 원 초과'는 29.0%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누진적 세율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자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억 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는 종합소득자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모든 구간에서 유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 소득구간에서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종합소득자의 평균소득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19) 분석방법은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p. 74에서 참고하였다. 이때 유효세율로 산출하는 이유는 한계세율 방식의 경우 소득공제 받는 소득원의 적용 순서에 따라 세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균세율을 적용하는 유효세율을 활용하였다.

〈표 II-12〉 소득유형별 유효세율

(단위: 천 원, %, 천 명)

구분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전체		
	평균 소득	유효 세율	대상자 수	평균 소득	유효 세율	대상자 수	평균 소득	유효 세율	대상자 수
3천 이하	7,508	6.8	2,498	4,236	2.9	4,865	5,371	4.8	7,362
3천~6천	42,482	11.6	301	15,465	6.3	3,379	17,676	7.3	3,680
6천~1억	76,416	15.6	135	37,728	11.3	1,314	41,340	12.0	1,449
1억~3억	159,621	22.4	112	88,545	18.7	344	106,050	20.1	457
3억 이상	796,982	28.6	29	526,995	30.1	16	700,160	29.0	46
평균	26,532	18.0	3,076	16,290	11.0	9,918	18,767	13.4	12,994

주: 1) 국세통계연보(2012)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2) 평균소득은 1인당 평균과세표준액을 의미함.

자료: 강성호·정원석(2013).

〈표 II-1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연금유형에서 1억 원 초과 소득자는 세제 감면 효과가 줄어들며,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평균적으로 차이가 없고, 6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액공제로 인해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제 개편 효과를 세액공제 시 조세감면액과 소득공제 시 조세감면액의 차액 대비 소득공제 시 조세감면액의 변화(세제혜택 변화 효과) 비율로 설명하면, 3천만 원 이하는 152.1%,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63.5%,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0%,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40.2%, 3억 원 초과는 -58.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10.5%만큼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유형별로 보면, 세제 개편 후 공적연금만은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여 세제혜택의 변화가 없지만 퇴직연금은 29,000원, 개인연금은 32,000원 정도 공제방식에 따른 소득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어, 개인연금의 가입 및 유지에 부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강성호·정원석, 2013).

〈표 II-13〉 과세표준소득 규모별 1인당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조세감면 효과

(단위: 천 원, %)

연금유형 과세표준 소득 구간	소득공제 시 효과(A)		세액공제 시 효과(B)		차이(B-A)	
	퇴직 연금	개인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
3천만 원 이하	68	90	171	227	103 (152.1)	137 (152.1)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45	161	237	263	92 (63.5)	102 (63.5)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73	291	273	291	0 (0.0)	0 (0.0)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535	513	320	307	-215 (-40.2)	-206 (-40.2)
3억 원 초과	924	827	382	342	-542 (-58.7)	-486 (-58.7)
합계	272	302	244	271	-29 (-10.5)	-32 (-10.5)

주: 1) 국세통계연보(2012)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2) () 안은 $(B-A)/A \times 100$ 으로 산출함.

자료: 강성호·정원석(2013).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세제 개편에 따라 사적연금 가입 및 유지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나, 중산층 이하에서는 가입 및 유지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산층 이하 집단에 대해서는 세제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변화된 세제에 맞는 효과적인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현행 연금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소결

최근 연금과세체계 개편은 개인연금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이외에 근본적인 과세체계 개편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이 완화된 것 외에는 기존의 연금과세체계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다음에서는 공사연금보험료 및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과세체계 전반적인 문제점과 보험료 세액공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모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사적 연금과세 방식이 서로 다르고, 퇴직 및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의 상한이 존재함에 따라 완전한 EET형 과세체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공적연금 보험료는 여전히 소득공제 방식을, 사적연금 보험료에만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연금과세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적연금 보험료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으므로 보험료 전액에 대해 공제되어 완전한 EET 과세체계라고 할 수 있으나, 퇴직 및 개인연금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보험료 세액공제 상한(연간 400만 원)이 존재하여 세액공제 이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EET, 그 이상 보험료에 대해서는 TEE가 적용되는 혼합방식이어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보험료 납부시점이든 연금수급시점이든 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연금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합소득과세에 적용하는 연금소득공제 규모가 크고 또한 공·사적 연금 간 구분 없이 합산과세²⁰⁾하는 현 체계에서 납입·운용·수급의 어느 단계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소득²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류건식·김대환, 2012). 즉, 공적연금보험료 전액과 사적연금 보험료 연간 4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시점에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납부 시 비과세) 연금수령 시에도 총 연금액 3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므로 연금소득 중 일부가 이중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퇴직 및 개인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통합적용이 가입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개인연금 세제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유인에 효과적이

20) 한편, 분리공제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에만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를 고려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홍원구, 2011).

21) 납부시점과 급부시점에서 모두 연금소득 공제가 발생하므로 일정연금소득의 경우 전혀 과세하지 않게 되는 현상 발생을 말한다.

지 못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류건식·김대환, 2012). 이와 관련하여 현행 보험료 공제상한이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공제수준을 상향한다거나 상향을 전제로 퇴직, 개인연금 공제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퇴직소득세(일시금 지급)와 연금소득세(연금 지급)에 있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퇴직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어 일시금 선호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퇴직일시금 수령 시에는 근속연수에 기초한 연분연승법²²⁾을 적용하거나 정률공제 비율이 커서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이 부재한 연금수급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류건식·김대환,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금과세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최근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과세 효과에 초점을 두고, 개인연금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세액을 근무연수로 나누어, 근무기간 1년의 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근무연수를 곱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계세율이 낮아진다.

Ⅲ. 해외사례

연금제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근대적 개념의 공적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으로 전파되었지만 이들 국가가 도입한 제도는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복지철학에 따라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비스마르크형 보수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고,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식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인데,²³⁾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륙법에 가까운 법률체계를 바탕으로 독일의 공적연금에 영향을 받으면서 영미식의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스마르크와 자유주의적인 잔여주의가 혼합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사연금 도입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거나 미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의 연금모델을 대상으로 사적연금제도의 조세제도를 살펴보고 OECD 주요 국가들의 사적연금의 조세제도를 분류하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은 사적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길어 제도 및 종류가 단순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 종류에 따라 세제체계도 상이하다. 미국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EET와 TEE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23)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미국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연금이나 이익분배형 연금제도(Profit Sharing Plan)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피용자(종업원)에게 세제상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기여금과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401(K) Plan 등은 모두 이익분배형 제도의 일종이다.²⁴⁾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비하여 401(k) Plan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401(k)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7,500달러까지 종업원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특히 50세 이상의 종업원에게는 추가로 연간 5,500달러의 추가적립과 추가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개인연금제도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제도는 DC형 퇴직연금처럼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별로 다른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형 IRA(Traditional IRA)는 각출단계에서 EET(Exempt-Exempt-Tax system) 방식 즉, 소득공제(E), 운용단계에서 비과세(E), 급부단계에서 과세(T)하고 있으며, Roth IRA는 TEE 방식의 세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다.²⁵⁾ 전통형 IRA는 기여금 납입시 공제를 받고 은퇴하고 난 후 연금을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과 반대로 세후소득을 불입하고 인출 당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에서 창출된 소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상관없이 인출 시 과세된다. <표 Ⅲ-1>과 같이 납세자가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기여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전통형 IRA는 50세 이하의 경우 연간 5,500달러, 50세 이상의 경우 6,500달러,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8,000달러 한도 내에서 개인소득의 100%까지 적립할 수 있다.

24) 권문일(2012), pp. 42~43.

25) 류건식·이상우(2008), pp. 4.

〈표 Ⅲ-1〉 미국 IRA의 납입단계 세제(2013년)

구분	전통형 IRA	Roth IRA	SIMPLE IRA	SEP IRA
주요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고소득자 등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사업장
특징	연령별, 결혼유무별 차등	연금수급 시 비과세	고용주 부담원칙,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고용주 부담원칙
소득공제 수준	- 연령별 차등 (\$5,500~\$6,500) - 부부의 경우 (\$8,000)	비공제	\$15,500	—

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역할을 하는 SIMPLE IRA의 경우 사용자 기여 이외에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에 대하여 15,500달러 한도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주로 고소득계층이 가입하는 Roth IRA는 개인의 기여금은 개인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전통적 IRA와 달리 기여금이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적격 수령액은 비과세될 수 있다.²⁶⁾

미국의 IRA는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같은 자산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지 않고 과세이연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IRA뿐만 아니라 401(K) 등과 같은 DC형 퇴직연금에서도 적립금 운용에 따른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다.

급여단계에서 모든 퇴직연금 급여는 가입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으로부터 조달된 급여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IRA는 유형별로 세제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며, 시니어유효세율(Senior Citizen Effective Tax Rate)이 적용되어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은 65세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주마다 다르며 65세 이전이 이후 세대보다 소득세율이 낮다.

26) 김용주 외(2008. 9), p. 22.

2. 영국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용제외 기업연금(Contracted-out occupational pension plans)의 경우, 기여단계에서 근로소득이 £97,200 이내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1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 고용주의 기여금은 전액 공제된다. 개인연금플랜(Personal pension plans)의 경우, 기여단계에서 근로소득이 £97,200 이내인 근로자가 납부한 기여금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한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35세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의 17.5%,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제외 기업연금(Contracted-out occupational pension plans)과 개인연금플랜의 운용단계에서 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DC형 플랜의 경우, 자금조달 수준이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자산에 대한 투자수입은 과세대상이다.

급여단계에서 적용제외 기업연금의 일시금은 최종 임금의 최대 150%까지는 비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개인연금플랜에 따른 연금소득 역시 기본적으로는 과세대상이지만 비보장형 자산(nonprotected rights)의 25%까지는 비과세 일시금(tax-free lump sum)으로 간주될 수 있다.²⁷⁾

영국에서는 1988년 4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적용제외(contract out)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세제적격 개인연금인 APP(Appropriate Personal Pension)는 적용제외가 가능한 개인연금에 해당한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1986년 도입되었으며, 가입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에 매월·일시납으로 납입한 보험료가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는 연금이다. 세제혜택은 기여 시 비과세, 운용 시 비과세, 급여 시 과세되는 형태의 EET형 제도이다. 수급개시 연령은 50세에서 75세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퇴직 시 적립금의 25%까지 비과세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영국은 사적연금 활용이 어려운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격의 사적연금제도

27) 강성호 외(2012), p. 87.

로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NEST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동으로 가입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기여와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과 함께 자영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연금제도의 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

〈표 Ⅲ-2〉 사용자, 근로자, 정부의 기여율

(단위: %)

구분	사용자 최저기여율	근로자 퇴직기여율	정부의 세제혜택
2012. 10~2016. 9	1.0	0.8	0.2
2016. 10~2017. 9	2.0	2.4	0.6
2017. 10월부터	3.0	4.0	1.0

자료: 류건식(2011. 7), p. 12.

NEST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가 변동하며 기여율은 총 2%(사용자 의무 기여율 1%, 근로자 0.8%, 정부 0.2%)에서 시작 하지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총 8%(사용자 3%, 근로자 4%, 정부 1%)를 기여한다. 자동가입규정으로 연소득 £5,035 이상 £33,540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여금의 연간 상한은 £3,600이다. NEST 가입자는 우선 소득공제 없이 세금을 납입하고 NEST에서 가입자 분 최소 분담금(예컨데 £100)에 표준세율(20%)을 곱한 금액을 국세청에 요청하여 연금 재원으로 전입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실제로 가입자 기여는 £80에 불과하다. 세율이 20%보다 높은 가입자는 공제되지 않는 부분을 확정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운용수익은 비과세이며, 인출 시 적립액의 25%까지 일시금은 비과세 인출이 가능하지만, 초과 인출 시에는 과세한다. 따라서 일정한 저소득층의 경우 기여 시 보조금과 EET 형식의 과세 형태로 간주된다.²⁸⁾

28) 류건식(2011. 7), pp. 10~13.

3. 독일

독일의 경우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유형에 따라 다르다. 직접보험(Direct insurance) 및 연금금고(pension institutions) 그리고 연금펀드(pension funds)는 원칙상 과세의무가 있는 임금, 즉 총소득에서 기여금을 납부할 때, 연금보험의 보험료 산정 한계인 4%까지 세금이 공제되고 그 상한은 1,800유로이다. 총소득이 아닌 순소득에서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리스터지원(Riester Forderung)을 받게 된다. 이 지원은 보조금(subsidy) 또는 세금공제가 가능한 특별비용공제액(tax-deductible specialexpense allowance) 형태로 부여되는데, 보조금 규모는 가입자(member)의 자녀수에 따라 다르다.

퇴직연금 유형별 사용자의 기여금에 대한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공통적으로 이들 연금에 대한 고용자 기여금은 피고용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보험(Direct insurance), 연금금고(pension institutions) 그리고 연금펀드(pension funds)는 기업경비(company expenses)로 간주됨으로써 세금공제 대상이다. 지원기금(Support funds)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며 한도는 급여의 유형 및 평균적인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²⁹⁾

독일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을 ‘2001 연금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2002년에 도입하였다. 리스터 연금의 경우 보조금 및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녀 수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납입금액의 2,100유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세 공제의 이중혜택을 받고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은 보조금만 받게 되어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의 액수를 넘을 경우 국세청은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감한 액수만 환급해 주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혜택만 받게 된다. 보조금은

29) 강성호 외(2012), pp. 81~85.

2002년 도입 후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08년 이후 각각 154유로와 185유로에 이르렀으며, 연간 납입할 최소보험료 및 최대보험료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2008년 이후 저연령층 연금가입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저연령층 가입자에게 200유로의 보조금과 신규 출생 자녀에게 300유로의 보조금 지급제도를 각각 신설하고 있다.³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사내충당금 방식(Book reserve)의 경우 기업 수입(company 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지만, 직접보험(Direct insurance), 연금기관(pension institutions) 그리고 연기금(pension funds)의 투자소득은 비과세(tax-exempt) 대상이다. 한편, 지원기금(Support funds)은 일정 수익률까지만 비과세(tax-exempt) 대상이다.

급여단계에서 퇴직연금(직접보험, 연금금고·연금기금)의 연금급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연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리스터 연금의 경우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 소득세 비과세, 즉, 60세 이상, 유지율이 12년 이상의 경우 수령액의 50% 비과세 적용한다.

4. 일본

일본은 퇴직연금제도 개혁에 따라 2001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여단계에서 확정기여형(기업형과 개인형이 존재) 퇴직연금 기업의 기여금³¹⁾은 법정 기여금 한도 내에서 손비 처리된다. 다만, 기업형연금만 가입한 경우와 기업형연금과 다른 퇴직연금을 병행하여 가입한 경우의 법정 기여금 한도가 다르므로 개별적인 한도에 따라 손비처리가 다르게

30) 류건식·이상우(2011, 12), pp. 2~5.

31) DC형의 기업부담금은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한 경우 연간 61만 2천 엔이며, 근로자가 DC형과 DB형 퇴직연금 병행하여 가입한 경우 각각 연간 30만 6천 엔이다.

적용된다. 즉, 근로자 1인당 법정 납입한도는 전자의 경우 연간 61만 2천 엔까지, 후자의 경우 연간 30만 6천 엔이므로 동 한도까지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기여금 납입한도는〈표 Ⅲ-3〉와 같이 2002년 연간 43만 2천 엔에 불과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에 따라 2004년 55만 2천 엔, 2010년 61만 1천 엔으로 상향조정이 이루어졌다.

〈표 Ⅲ-3〉 기업형연금제도의 손비처리 한도(연간)

(단위: 엔)

구분	2001. 10	2004. 10	2010. 1
타 퇴직연금이 없는 경우	432,000	552,000	612,000
타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216,000	276,000	306,000

주: 종업원 1인당 기준임.

자료: 松澤繁(2011. 9)을 기초로 작성함.

2012년부터 종업원의 매칭기여가 허용되면서 종업원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소규모 기업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매칭기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업의 기여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종업원이 추가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형연금에만 가입한 경우 연간 61만 2천 엔의 50%(30만 6천 엔)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형연금 가입자가 다른 퇴직연금에 병행 가입하고 있는 경우 연간 30만 6천 엔의 50%(15만 3천 엔)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 60세부터 연금 지급, 연금수급 기간 10년 이상, 연금수급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등의 적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혜택 등이 제공된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1984년 세법 개정에 근거하여 생명보험료 공제와 별도로 분리된 개인연금보험료 공제가 적용되며,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연간 6만 8천 엔(2012년 신규 계약 적용)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에게 부과하는 특별법인세 연 1.173%(세율1%는 국세이고 0.173%는 지방세)가 과세되지만 경기부양 차원에서 2014년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근로자 적립금과 개인연금의 적립금은 과세가 이연된다. 급부단계에서 사적연금 급여의 일부는 소득(income)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서는 10%~37%의 세율로 과세된다. 퇴직연금의 노령연금은 공적연금과 합산한 연금 수입에서 공적연금 등의 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시금 지급의 경우 소득공제 없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장애급부금은 비과세 대상이고, 사망일시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탈퇴일시금은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 과세대상이 된다. 급부단계에서 개인연금은 연금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부분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 잡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시금 지급 시 마찬가지로 납입보험료 부분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 일시소득으로 과세된다.

5. 스웨덴

강제가입 개인연금인 프리미엄연금(Premium pension: PP)에는 세금공제 혜택이나 보조금 혜택이 없다. 다만, 퇴직연금은 기여단계에서 사용자만이 기여하는데,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70% 이하인 연금에 대해서만 그 기여금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기여금은 사용자의 사회보장보험료 계산을 위한 소득에는 포함되지만, 근로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운영단계에서 퇴직연금의 투자소득에 대해서 15%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세율은 평균적인 장기수익률을 반영하는 것이지 실제의 수익률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은 아니다.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수급단계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혜택이 없다.³²⁾

32) 강성호 외(2012), pp. 71~72.

6. 프랑스

프랑스는 세법에 근거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전통적인 퇴직연금과 에반(Evin)법³³⁾에 근거한 확정기여형제도인 단체연금저축제도(PERCO) 등이 존재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세법 제39조)과 확정각출연금(세법 제83조)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부담액은 전액 경비로 처리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이외에 근로자의 부담도 가능한데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근로자 소득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있다. 또한 단체연금저축제도(PERCO)의 경우 근로자 기여금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³⁴⁾ 한편, 현재 프랑스에서 보편적인 개인연금저축으로 제공되는 PERP(Plan d'épargne retraite populaire)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7. 주요국 사적연금 과세체계 비교

가. 주요국의 사적연금 세제체계 분류

OECD 주요국가의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은 크게 보조금과 세제혜택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 또는 추가 기여분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독일(직접보험),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일부의 퇴직연금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호주의 강제퇴직연금제도에서

33) 에반(Evin)법(2004)은 사적연금의 발전을 위하여 연금단체저축제도(PERCO)와 개인연금저축제도(PERP)를 도입한 근거법이다.

34) 損害保険事業総合研究所(2009), pp. 247~248.

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연금의 기여금에 대하여 노르웨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다양한 개인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보조금을 제공한 개인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표 Ⅲ-4〉 주요국 사적연금의 보조금 및 세제지원 여부

구분	보조금	세제혜택
개인연금	독일, 영국	노르웨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퇴직연금	독일, 호주, 일본(중소기업)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주: 개인연금은 Riester P(독일), NEST(영국), IRA(미국)를 대상.
 자료: 杉田浩治(2010), 류건식(2011), 류건식·이상우(2011), 류건식·이상우(2008), 강성호 외 2인(2012).

즉, 영국(NEST 제도)과 독일(리스터 연금)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기여금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있으며, 독일의 경우 소득공제가 동시에 제공된다.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기여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조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제지원 없음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세액방식으로 공적연금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아일랜드, 노르웨이이며, 이들 국가는 조세부담으로 공적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표 Ⅲ-5〉 주요국의 공·사연금 기여단계 세제비교

비교대상 국가	소득공제	—		독일,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 ¹⁾
	세액공제	스웨덴 ²⁾		스웨덴
	세제지원 없음	—	—	노르웨이, 미국, 아일랜드
		세제지원 없음	세액공제	소득공제
사적연금				

주: 1) 독일과 영국의 경우 보조금 방식의 개인연금인 Riester P(독일), NEST(영국)을 포함.

2) 스웨덴은 강제가입 개인연금(P.P)의 경우 세제지원이 없음.

자료: 강성호 외 2인(2012), 국민연금연구원(2011), 정창률(2012), 김원섭(2012), 권문일(2012), 주은선(2012).

나. 주요국의 사적연금 세제체계 비교

사적연금에 대한 OECD 주요국의 기여단계에서 세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기여금은 정액 또는 급여의 일정비율 등의 상한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가입자 기여금은 DB형 제도에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401k 또는 IRA 등의 DC형 제도의 경우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사적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제혜택 유무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호주의 경우 가입자 기여금이 과세대상이 된다.

사적연금의 운용단계에서 과세는 기여단계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세제적격 연금의 경우 운용이익 및 연금자산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와 이탈리아에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운용단계에서 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지만 유예기간의 종료되면 과

세될 가능성이 있다.

사적연금의 급여단계에서 과세는 기여단계에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급여단계에서 연금지급과 일시금 지급 시 과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호주,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연금뿐만 아니라 일시금의 급부에 대해서도 세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의 국가에서는 일시금급부에 대해 세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표 Ⅲ-6〉 주요국의 사적연금 세제비교

구분 국가(기준 연도)	사적연금				
	기여단계	운용단계	급여단계		보조금 지급
			연금지급	일시금지급	
노르웨이(2006)	T/PE	E	T/PE	T	×
덴마크(2006)	E	T	T	T	×
스웨덴(2012)	E	T	T	T	×
핀란드(2006)	E	T	T	T	×
스위스(2006)	E	E	T	T	×
룩셈부르크(2006)	E	E	T/PE	T/PE	×
오스트리아(2006)	T/PE	E	T/PE	T/PE	×
네덜란드(2006)	T/PE	E	T/PE	T/PE	×
독일(2013)	E	E	T/PE	T	○
프랑스(2006)	E	—	T	—	×
영국(2013)	E	E	T	T/PE	○
캐나다(2013)	E	E	T	T	×
호주(2013)	T	T	T/PE	T/PE	○
미국(2013)	T/PE	E	T	T	×
아일랜드(2006)	T/PE	E	T	T/PE	×
일본(2013)	T/PE	E	T/PE	T/PE	○(중소) ³⁾
스페인(2006)	E	T	T	T	×
이탈리아(2003)	T/PE	E	T	T/PE	×

주: 1) E = exempt; T = taxed under personal income tax; T/PE는 원칙적으로 과세이나 일부 비과세(partial exemption or deduction from taxation).

2) 각국에서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은 특정한 사적연금에 대해서만 지급.

3) 중소기업퇴직급여공제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

자료: Yoo & seres(2004), OECD(2008), 谷内陽一(2009), 강성호 외(2012), 杉田浩治(2010), 류건식(2011), 류건식·이상우(2011), 류건식·이상우(2008), 국가별 인터넷 등을 기초로 분류 및 보완 작성.

8. 소결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세제체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크게 정부가 직접지원을 하는 경우와 정부가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가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앞서 현재 우리나라 연금세제 지원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소득수준별 역진성 문제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이다. 독일은 소득수준별로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리스터 연금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전달되어 독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인 역할 분담의 중요한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³⁵⁾ 그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방식에서 지적된 지원의 역진성과 효율성문제를 해소하여 중·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 및 가입액수준을 제고하면서도 적절한 세액공제율을 통해 지원에 따른 과도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개인의 자원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가 정한 12%의 세액공제율은 적절한 것인지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5) OECD(2012), Pension at a glance.

IV. 이론모델과 응용

1. 이론모델

여기에서는 개인연금 보험료 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그리고 실증분석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모형에서는 간단한 2기간 모형을 이용해 제도 변화에 따른 개인의 최적화문제에 대한 해를 찾고 개인의 경제적 행동의 특성을 도출한다.

가. 기본모델: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없는 경우

전체 생애기간을 은퇴전후의 2기간 모형으로 단순화할 수 있고 볼록(Concave)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정할 경우 개인의 생애전체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begin{aligned} \max U(x, y) &= Ax^{1-\beta}y^{\beta} \\ \text{s.t. } (1-t)I &= x + \frac{y}{1+r} \end{aligned} \tag{1}$$

식(1)의 효용함수에서 x 는 1기(근로기)의 소비, y 는 2기(은퇴기)의 소비를 의미하며 β ($0 < \beta < 1$)는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시점에 느끼는 2기 효용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β 가 1/2 보다 큰 경우라면 현재의 소비보다 미래의 소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고, 1/2보다 작은 경우라면, 자신이 미래에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과 오랫동안 자원을 소비하

지 못하게 되는 불리함 등으로 인해 미래소비 보다 현재소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r 은 소비를 2기로 미룰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이자를 고려한 변수이다.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자원배분은 예산제약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I 는 근로기에 얻게 되는 총소득을 의미하고 t 는 소득 세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t)I$ 는 소득이 I 인 사람의 가처분소득을 의미하고 t^*I 는 정부의 조세수입(개인의 조세부담)이다. 1기(근로기)에는 세율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2기(은퇴기)에는 특별한 소득 없이 1기에 저축해 놓은 자금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앞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해당 효용함수를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볼록한 모양의 일반함수로 가정하여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의 최적화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최적화 조건을 얻게 된다.

$$MRS_{x,y} = \frac{MU_x}{MU_y} = 1 + r \quad (2)$$

(단, $MU_x = \frac{\partial U}{\partial x}$, $MU_y = \frac{\partial U}{\partial y}$ 를 의미한다.)

식(2)는 1기(근로기)와 2기(은퇴기) 사이 소비의 한계효용 비율이 이자율과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이자율을 고려한 각 기의 한계효용을 같게 하여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생애전체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2)를 주어진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1기의 소비 x 와 2기 소비 y 에 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x^* = (1 - \beta)I(1 - t), \quad y^* = \beta I(1 - t)(1 + r) \quad (3)$$

식(3)에서 보듯이 미래소비(저축)는 세율(t), 이자율(r), 그리고 2기 소비에 대한 가중치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율 t 가 작아질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1기와 2기의 소비는 함께 증가한다. 그리고 r 과 β 값이 작아질수록 2기의 최적소비량 y^* 는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축에 대한 수익률(r)이 작아질수록, 그리고 미래소비에 대한 중요도(β)가 작아질수록 미래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건의 변화에 따른 자원배분 변화에 대한 직관적인 예상과 일치한다.

나. 이론모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혹은 근시안적인 자원배분(주관적인 β 값이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으로 인해 충분한 노후 대비가 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경제주체에 대해 세지 지원을 통해 미래소비(저축)를 보장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지원 형태로는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세액공제방식에 따른 세제효과는 미래를 위한 충분한 자산 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미래소비(y)에 대해 일정 세액공제율(a)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에 따른 실효세율을 소득과 세액공제율의 함수를 $t^C(I, a)$ ³⁶⁾라고 가정하면 개인에게 주어지는 최적화문제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max U(x, y) &= Ax^{1-\beta}y^\beta \\ \text{s.t. } (1-t^C)I &= x + \frac{y}{1+r} \end{aligned} \quad (4)$$

이 경우 최적화 문제를 풀어 1기 소비의 한계효용과 2기 소비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최적자원배분조건인 각 기의 최적소비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36) $t^C(I, a) < t$ 이고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율은 소득(I)과는 정의 관계 세액공제율(a)과는 음의 관계에 있는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시 실효세율은 부록을 참고한다.

$$x^{C*} = (1 - \beta)I(1 - t^C), \quad y^{C*} = \beta I(1 - t^C)(1 + r) \quad (5)$$

$t^C(I, a)$ 와 β 값이 작을수록 2기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이전과 같고, 추가된 변수인 공제율 a 에 대해서는 a 가 커질수록 $t^C(I, a)$ 가 작아지므로 현재와 미래의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이 있는 경우 미래소비 y 는 세제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크다($y^* < y^{C*}$).

둘째, 소득공제방식에 따른 세제효과를 살펴보면, 소득공제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실효세율 $t^R(I)$ 는 누진적 과세구조를 감안하면 소득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함수가 되고 주어진 효용함수에서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max U(x, y) &= Ax^{1-\beta}y^\beta \\ \text{s.t. } (1 - t^R)I &= x + \frac{y}{1+r} \end{aligned} \quad (6)$$

주어진 최적화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다.

$$x^{R*} = (1 - \beta)I(1 - t^R), \quad y^{R*} = \beta I(1 - t^R)(1 + r) \quad (7)$$

소득공제를 제공했을 때의 실효세율이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는 경우보다 낮다면 소득공제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혜택이 없는 경우 보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가 늘어나게 된다.

셋째, 소득계층별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비교하면, t 가 소득에 대한 함수가 되므로 세제개편에 대한 실효세율의 효과는 경제주체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한계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활용한 이유는 한계세율은 과세대상 모든 소득원의 총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느 소득원 하나가 한계세율을 독점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소득원에 대해 한계세율로 효과를 제시한다면 전체 세제 혜택은 과대 혹은 과소 계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조세지출 대상이 되는 소득원

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각 소득원에 대해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조세지출액의 합산액은 실질적인 조세지출액보다 훨씬 커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산출은 한계세율이 아닌 실효세율(평균세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세제혜택 전의 실효세율(t)이 소득공제율(a)보다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가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의 세제혜택보다 크게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이 12%라고 했을 때, 소득이 1억 이상인 사람이 400만 원의 개인연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소득이 1억 이상 3억 이하인 사람의 실효세율은 약 20%로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실효세율로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금액은 400만 원에 실효세율 20%를 곱한 80만 원이 된다. 반면, 세액공제로 세제혜택이 전환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은 400만 원에 세액공제율 12%를 곱한 48만 원이 되어 소득자의 세제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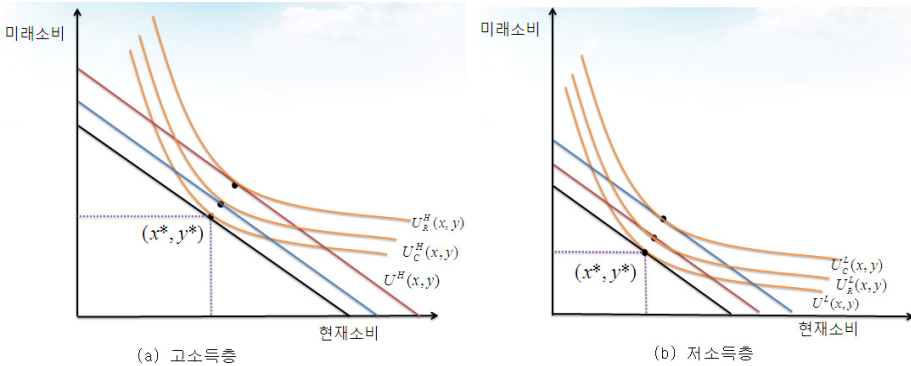
반면, 총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간 400만 원의 개인연금을 납부한다고 할 때 실효세율이 6%(혹은 그 이하)이므로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은 400만 원에 6%를 곱한 24만 원이 되나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400만 원에 세액공제율 12%를 곱한 48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어 세제혜택은 커지게 된다.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과세대상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이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므로 세제혜택이 소득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서 실효세율이 세액공제율 보다 높은 계층은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 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아서 실효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낮은 계층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실효세율이 세액공제율과 같은 계층은 정부가 어느 제도를 택하든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제도에 따른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은 $t^R < t^C < t$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은

$t^C < t^R < t$ 이 된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적용세율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적용세율이 낮은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소득계층별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른 후생변화 효과 비교



〈그림 IV-1〉의 (a)와 (b)는 앞서 대수적으로 풀이한 경제주체의 최적화 문제와 연금세제제도에 따른 효용수준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림 IV-1〉의 (a)는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는 경우의 예산제약선(가장 안쪽의 검은 실선)과 (b)의 저소득층의 예산제약선에 비해 바깥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보다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IV-1〉 (a)와 가장 바깥쪽 실선과 (b)의 중간 쪽 실선으로 그려진 예산제약선은 고소득층(a)와 저소득층(b)가 각각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을 때 예산제약선이 되는데, 누진세 제도 하에서 실효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예산제약선의 이동 (그림 (a))이 실효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의 예산제약선의 이동 보다 (그림 (b))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산제약선의 이동에 따른 총효용(1기와 2기 소비에 따른 효용)의 증가폭 역시 고소득층 효용의 증가(U^H 에서 U_R^H 로)가 저소득층의 효용의 증가(U^L 에서 U_R^L 로)에 비해 크다.

반면 〈그림 IV-1〉의 (a) 중간 쪽 실선과 (b)에서 가장 바깥쪽 실선으로 표현

된 예산제약선은 세액공제를 이용한 세제지원 시 예산제약선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세액공제제도하에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개인연금저축 기여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제혜택을 받게 되므로, 세액공제율이 고소득층의 실효세율과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사이에서 정해진다고 가정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은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제도 보다 적은 세제혜택을 누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은 개인연금 세율보다 높은 비율로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2. 이론모델의 현실적 응용

가. 분석자료, 대상, 내용

앞의 이론적 모형을 현실이 가미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2012)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국세통계연보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400만원 이하(퇴직연금의 본인 부담분 포함)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으로 산출되고 있는 실적 자료이다. 다만, 통계 결과 산출 시 활용된 원시자료에 대한 접근은 불가하기 때문에 통계연보상 제공되고 있는 자료형식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대상은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근로소득자이면서 종합소득자인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국세통계연보의 산출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에서의 결과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과대계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값의 정확성과 절대적 수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득계층별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각각과 이들을 합산한 전체 대상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두 집단의 합산인 전체 값의 절대치가 가지는 한계는 미리 밝혀둔다.

분석내용은 앞 절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을 근거로 2013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연금세제개편에 따른 효용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가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소득(I)은 2011년 기준 과세표준소득을 활용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앞의 이론모형의 논리를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소득과 생애소비지출을 완전히 산출하여야 하지만, 확보 자료의 성격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1년 기준 과세표준소득이 생애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접근한다. 즉, 동 과세표준소득은 생애소득을 연간 평균한 값으로 가정하여 분석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세율(t)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전후의 유효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 과표구간이 변화할 수 있지만 국세통계연보 구성상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적용 후 실제 과표구간의 변화를 구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과표구간은 불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공제적용 후 산출된 과세효과는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부 소득계층은 소득 공제 등으로 인해 과표구간이 하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분석세율을 한계세율로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다른 소득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에서 한계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연금보험료 공제에 적용할 고유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대한 결과도 참고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베타(β)는 전후기 소비의 상대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 $0 < \beta < 1$ '의 범위에 있다. 베타(β)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주관적 척도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유일한 값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1/3, 1/2, 2/3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산출된 값은 모두 2011년 말 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여 분석하고 평가

한다.

이러한 가정과 방법을 통해 산출된 현재소비, 미래소비는 설정된 함수관계에 의해 산출된 결과이므로 절대적 산출 값 자체의 의미보다는 공제 전후에 따른 변화분의 상대적 차이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나타난 총효용 변화 정도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분석결과

위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기준 평균소득자의 과세표준소득은 연 18,767천 원으로 나타났다. 동 과세표준을 해당년도 세율을 고려하여 유효세율(결정세액 /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 공제가 없는 경우는 14.64%로 나타났으며, 소득공제(개편 전)를 적용할 경우 13.41%, 세액공제(개편 후)를 적용할 경우 13.43%로 나타났다.

현재 및 미래소비는 베타(β)값이 증가할수록 현재소비는 감소하고, 미래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두 공제효과 중 소득공제에 의해 현재 및 미래소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효용은 베타(β)값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모두 증가(소득공제효과가 더 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효용 변화율은 베타(β)값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증가(소득공제효과가 더 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연금보험료에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과세표준을 그 만큼 낮추기 때문에 기 납부한 세금의 일정부분을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현재 및 미래소비를 증가시키고 개인 및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V-1〉 연금세제 개편에 따른 총효용 추정 및 변화 분석 결과

(단위: 천 원, %)

구분 \ 베타값		1/3	1/2	2/3
과세표준소득(천 원)		18,767	18,767	18,767
유효세율(%)	공제 전	14.64	14.64	14.64
	소득공제 시	13.41	13.41	13.41
	세액공제 시	13.43	13.43	13.43
현재소비 (천 원)	X_1	10,680	8,010	5,340
	X_2	10,834	8,126	5,417
	X_3	10,832	8,124	5,416
미래소비 (천 원)	Y_1	5,340	8,010	10,680
	Y_2	5,417	8,126	10,834
	Y_3	5,416	8,124	10,832
총효용	U_1	8,477	8,010	8,477
	U_2	8,599	8,126	8,599
	U_3	8,597	8,124	8,597
총효용변화율 (%)	$(U_2 - U_1)/U_1$	1.44	1.44	1.44
	$(U_3 - U_1)/U_1$	1.42	1.42	1.42

주: 하첨자 1, 2, 3은 각각 공제 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시점을 의미함.

자료: 2011년 국제통계연보의 소득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산출.

다음에서는 연금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수준별 총효용변화율(증가율)을 살펴보자. 이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총효용변화율(증가율)은 증가하다가 6천~1억 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아진 후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공제로 인한 총효용증가율이 세액공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2013년 세제개편으로 총효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총효용의 감소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사중손실분(deadweight loss)이 아니라 국가 재원으로 들어간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2〉 연금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수준별 총효용 증가율 비교

(단위: %)

구분		~3천 만 원	3천~ 6천만 원	6천~ 1억 원	1억~ 3억 원	3억 원 초과	합계
유효세율	공제 전	5.42	8.31	13.10	20.85	29.19	14.64
	소득공제 시	4.76	7.34	12.00	20.06	29.04	13.41
	세액공제 시	4.58	7.16	11.98	20.20	29.08	13.43
총효용 변화율	$(U_2 - U_1)/U_1$	0.70	1.06	1.26	1.00	0.21	1.44
	$(U_3 - U_1)/U_1$	0.89	1.26	1.28	0.82	0.15	1.42

주: 2011년 국세통계연보의 소득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산출.

V. 실증분석

1. 사용자료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재정패널 5차년도 자료이다. 실증분석에 앞서 동 자료를 가구주 및 가구 중심으로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 재정패널 가구주 및 가구현황

(단위: 가구)

구분		가구수	평균
가구주	연령(12년 기준)	(4,527)	50.9세
	성터미(남=1)	(4,527)	74.4%
	혼인터미(기혼=1)	(4,527)	69.9%
	교육기간	(4,527)	12.2년
	취업형태터미(임금=1)	(3,768)	67.9%
	세제적격 개인연금가입여부	(4,527)	8.0%
	세제적격 개인연금액	(361)	247만 원
	개인소득(근로+사업)	(3,813)	3,286만 원
가구	가구금융자산	(3,597)	3,740만 원
	가구원 수	(4,527)	2.7명
	지역터미(시=1)	(4,527)	90.4%

주: 가구가중치 적용한 가중평균 값 기준임.
자료: 재정패널 5차 원시자료 분석.

가구주의 연령은 12년 기준으로 50.9세였으며, 남성 가구주 비율이 전체의 74.4%로 분석되었다. 혼인한 가구주 비율은 69.9%, 교육기간은 12.2년으로 나타나 가구주는 평균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주의 취업형태를 임금과 비임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

의 비율은 67.9%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개인소득(근로 + 사업)은 연간 3,286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연간 3,740만 원 수준, 가구원수는 2.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의 대부분인 90.4%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기초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가구가 미가입 가구에 비해 8.4세 정도 낮아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로 조사되었으며, 남성 가구주 비율도 가입가구가 미가입 가구에 비해 11.9%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금근로자로의 취업률과 개인소득의 경제적 변수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가입가구가 3,010만 원이었으나, 가입가구는 약 두 배인 5,936만 원으로 분석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가입 확률도 높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가구금융자산의 경우 미가입가구가 3,357만 원이었으나, 가입가구는 7,257만 원으로 분석되어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가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가입할 확률도 높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표 V-2〉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여부별 가구주 및 가구의 기초통계

(단위: 세, %, 년, 만 원, 명, 가구)

구분	미가입		가입	
	평균	빈도	평균	빈도
가구주연령(12년 기준)	51.6	(4,165)	43.2	(362)
가구주 남성비율	73.4	(4,165)	85.3	(362)
가구주 혼인률	68.9	(4,165)	81.7	(362)
교육연수	12.0	(4,165)	14.9	(362)
임금근로 취업률	65.5	(3,408)	90.7	(360)
개인소득(근로+사업)	3,010	(3,453)	5,936	(361)
가구금융자산	3,357	(3,244)	7,257	(353)
가구원 수	2.7	(4,165)	3.2	(362)
도시거주율	90.1	(4,165)	94.4	(362)

주: 가구 및 개인조사 자료를 가구주 중심의 가구단위 형태로 변형하여 분석.
자료: 재정패널 5차 원시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입여부뿐 아니라 소득계층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표 V-3〉 소득분위별 가구주 및 가구의 기초통계

(단위: 세, %, 년, 만 원)

소득분위	가구주 연령 (12년 기준)	가구주 남성 비율	가구주 혼인율	교육 연수	임금근로 취업률	개인소득 (근로+사업)	가구자산	가구원 수	도시 거주율
1분위	59.2	57.0	58.8	9.3	36.1	418.58	2224.92	2.3	79.4
2분위	53.0	58.6	55.2	11.1	61.4	1033.12	2440.52	2.5	88.8
3분위	48.1	57.5	55.6	12.2	72.9	1500.06	2278.08	2.6	89.7
4분위	46.1	66.7	62.1	12.5	65.9	1889.26	2383.54	2.6	91.1
5분위	44.8	81.8	67.8	13.0	70.5	2355.01	3054.82	2.6	94.9
6분위	43.0	90.9	80.2	13.5	70.3	2883.95	2370.50	3.1	90.5
7분위	41.7	90.2	84.8	13.9	76.1	3459.80	2977.54	3.1	93.8
8분위	42.0	91.9	87.3	14.5	80.2	4268.98	3627.70	3.2	92.5
9분위	44.6	93.9	93.5	14.9	72.3	5476.14	4692.57	3.5	90.7
10분위	47.3	97.4	95.1	15.3	80.2	9815.47	9637.38	3.5	97.5
합계	47.1	78.5	73.9	13.0	68.7	3286.46	3717.71	2.9	90.9

주: 소득분위가 클수록 고소득층임(각 집단은 10%로 구분됨).

자료: 재정패널 5차 원시자료 분석.

연령은 7,8분위를 중심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저소득층) 또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고소득층)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고령이 될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연령 통계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성별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비율, 교육기간, 취업률, 개인연금가입여부, 개인소득 수준, 가구원 수 모두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도시 지역에 거주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득계층 구분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탄력성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특성상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구주)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소득계층별 납세율과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적 분석에 앞서 설명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소득계층을 OECD에서 구분하고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이하), 중산층(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V-4〉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납세율은 9.8%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납세율은 증가하여 전체 납세율은 37.5%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은 소득계층별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층 1.1%, 중산층 4.6%, 고소득층 23.4%였다. 전체적으로는 고소득층이 총 개인연금 가입자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4〉 소득계층별 납세율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

(단위: %)

소득계층	납세율 ¹⁾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 ²⁾	
저소득층	9.8	1.1	(2.5)
중산층	33.6	4.6	(23.7)
고소득층	64.1	23.4	(73.8)
전체	37.5	9.4	(100.0)

주: 1) 납세율은 각 소득계층별 대상자 중에서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비율.

2) 가입률은 각 소득계층별 대상자 중에서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자 비율. 단, () 안은 전체 가입자에서 해당 계층이 차지하는 대비 비율.

3) 소득계층은 소득(근로 +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4) 소득계층은 OECD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이하), 중산층(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구분.

이제 이러한 기초통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연

금 가입결정 요인과 소득계층별 개인연금 가입 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과 가입률 변화 추정

가. 개인연금 가입결정요인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 분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경우(로짓분석모형, $\text{납부} = 1$, $\text{비납부} = 0$)와 개인연금 납부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경우(최소자승법, OLS)이다. 전자인 로짓분석은 설명변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자승법(OLS)은 설명변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활용의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최소자승법(OLS)에서는 수준변수 값이 클 경우 자연대수 형태로 전환하여 분석하므로 여기에서도 수준변수들은 모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독립변수로는 소득과 금융자산의 로그값, 가구원 수, 연령, 연령제곱, 성더미(남자: 1), 결혼여부더미(기혼: 1), 교육연수, 근로형태더미(임금: 1), 지역더미(도시: 1)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모형1:

$$\begin{aligned} \text{개인연금가입여부} = & a_0 + a_1 * \ln(\text{소득}) + a_2 * \ln(\text{금융자산}) + a_3 * \text{가구원수} \\ & + a_4 * \text{연령} + a_5 * \text{연령제곱} + a_6 * \text{성더미} + a_7 * \text{결혼더미} \\ & + a_8 * \text{교육연수} + a_9 * \text{고용형태} + a_{10} * \text{거주지역} \end{aligned}$$

모형2:

$$\begin{aligned} \ln(\text{개인연금납입액}) = & a_0 + a_1 * \ln(\text{소득}) + a_2 * \ln(\text{금융자산}) + a_3 * \text{가구원수} \\ & + a_4 * \text{연령} + a_5 * \text{연령제곱} + a_6 * \text{성더미} + a_7 * \text{결혼더미} \\ & + a_8 * \text{교육연수} + a_9 * \text{고용형태} + a_{10} * \text{거주지역} \end{aligned}$$

〈표 V-5〉 연금가입요인분석(로짓 및 OLS 분석결과)

설명변수	로짓분석 (모형1)			OLS (모형2)
	계수	S.E.	Exp(B)	계수
소득의 로그값	1.458***	(0.134)	4.297	0.303***
금융자산의 로그값	0.301***	(0.053)	1.352	0.147***
가구원수	0.103	(0.068)	1.109	-0.041
연령	0.047	(0.066)	1.048	0.136**
연령제곱	-0.001	(0.001)	0.999	-0.001**
성더미(남자:1)	-0.552**	(0.220)	0.576	0.209
결혼여부더미(기혼:1)	-0.396*	(0.234)	0.673	-0.661***
교육연수	0.022	(0.028)	1.022	0.023
근로형태더미(임금:1)	1.421***	(0.207)	4.143	0.053
지역더미(도시:1)	-0.190	(0.259)	0.827	-0.417**
상수	-17.710***	(1.559)	0.000	-1.172

주: 1) C는 개인연금 납부액(0 포함)이며, ln(C)는 개인연금 납부액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으로 종속변수임.

2) 금융자산에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입액은 제외됨.

3) *는 유의수준 10%에서, **는 유의수준 5%에서,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을 의미.

로짓모델(logit model)을 이용한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모형1)를 살펴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자산보유가 많을수록, 여성이고 미혼일수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일수록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의 경우는 유의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정연령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가구원 수, 교육수준, 지역 변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이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확률이 높으며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할 확률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모형2), 로짓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금융자산에 대해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연금 납부액을 증가시킬 유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금융자산(개인연금 납부액 제외)과 개인연금 납부액은 대체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동 모형에 의하면 두 변수의 관계는 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개인연금 보험료도 금융자산의 한 부분이어서 다른 금융자산을 선택하면 개인연금 납부는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금융자산을 가질수록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가 클 것이고, 특히 동 집단의 경우 세제혜택이 많은 개인연금에 추가적으로 들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른 변수들은 로짓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나.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률 변화 추정

이제 위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 행태 변화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과세체계의 변화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확률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확률의 변화 정도를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로짓분석의 특성상 설명변수인 소득변화가 종속변수인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소득변화에 따른 한계효과 추정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최소자승법(OLS)에 기초한 회귀모형에서는 계수값 자체가 한계효과를 의미하나 로짓분석에서는 별도의 한계효과를 산출해야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 납부여부에 대한 각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6〉 개인연금 납부여부의 한계효과 분석

변수	한계효과(dy/dx)	표준오차	평균값
소득의 로그값	0.067	0.008	7.853
자산의 로그값	0.014	0.003	7.286
가구원 수	0.005	0.004	2.909
나이	0.002	0.004	46.601
나이의 제곱	0.000	0.000	2,311.280
성별*(남자=1)	-0.030	0.018	0.803
결혼여부*(기혼=1)	-0.020	0.016	0.761
교육연수	0.001	0.002	13.204
고용형태*(급여=1)	0.055	0.007	0.690
거주지역*(도시=1)	-0.009	0.017	0.901

주: 한계효과는 평균을 중심으로 한 한계효과임(MEM).

한계효과를 고려하여 소득이 1%씩 증가함에 따라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 확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소득(연간 2,574만 원)에서 한계효과는 0.067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소득 1% 증가에 따른 개인연금 추가 가입확률은 0.0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 2% 증가 시 0.133%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입변화율이 1% 이상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득변화율은 소득은 약 17%정도 증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7〉 소득변화율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변화율

(단위: 만 원)

소득변화율	소득액	가입변화율
0%(초기소득)	2,574	0% (초기치)
1.0%	2,599	0.067%
2.0%	2,625	0.133%
5.0%	2,702	0.328%
10.0%	2,831	0.640%
17.0%	3,011	1.054%
20.0%	3,088	1.224%

한편, 보다 현실성을 고려하여 앞에서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공제체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가입률변화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과세체계 변환 시 과세표준소득액 기준으로 한 평균적 소득변화율은 소득공제 시 1.44%, 세액공제 시 1.61%로 추정되었는데, 이를 앞에서 추정한 회귀계수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연금 가입변화율은 각각 0.096%, 0.107%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효과로 볼 수 있다. 연금과세체계개편 전에는 소득공제 효과에 의해 개인연금 가입변화가 발생하였다면, 연금과세 개편으로 세액공제 효과에 의해 개인연금 가입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면, 과세체계개편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효과는 약 0.011%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결과는 평균소득을 중심으로 금액의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를 고려한 것이므로 소득계층에 따라 그 한계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앞서 이론모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액공제로 인해 혜택이 늘어나는 중·저소득층은 가입률이 증가하고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고소득층은 가입률이 평균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V-8〉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변화율

(단위: 만 원, %, %p)

구분	과세표준소득액	소득변화율	가입변화율
초기소득	1,876.7	0%(초기소득)	0%(초기치)
소득공제 시(A)	1,903.8 (1,876.7+27.1)	1.44%	0.096%
세액공제 시(B)	1,906.9 (1,876.7+30.2)	1.61%	0.107%
연금과세체계 변화효과 (A-B)	-3.1	-0.17%p	-0.011%p

한편, 이러한 한계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회비용관점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여 세제혜택이 감소함에 따라 수리적 측면에서의 납부유인이 떨어지기는 하나,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성을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비해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감소하기는 하나, 여전히 존재하는 세제혜택과 납부보험료 운용실적의 합산수익률이 다른 대체금융상품보다 여전히 크다면 가입유인이 감소할 이유는 없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수준은 최저 0%에서 최대 100%(전액 세액공제)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추정에 의하면 현행 보험료 유효세율은 13.4%이므로 세액공제방식에 의할 때 12% 세제혜택에 비해 1.4%p 감소하게 되나, 보험료의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므로 이와 합산한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수준과 비교하여 적지 않다면, 이론적으로는 개인연금을 탈퇴할 유인은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5년 이상 유지 조건 등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기본적으로 충당해 주어야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에 있어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조기탈퇴 시 약 4.4%의 추가세율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최소 세액공제액은 4.4%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익률 등 여타 조건이 다른 금융상품과 같다는 전제 하에 향후 적용될 세액공제액이 최소한 4.4% 이상이 될 때 노후를 위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12% 세액공제로 평균적인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여지는 있지만, 개인연금 가입률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없고 또한 탈퇴할 유인도 없다고 하겠다.

3. 소득계층별 개인연금가입액 탄력성 추정 및 재정효과 분석

가.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한 개인연금 가입액 탄력성 추정

본 장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으로 인한 가치분소득의 변화가 개인연금 가입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자료에서는 단순히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할 경우 이질성이 존재하는 소득계층 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³⁷⁾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집단별로 개인연금 가입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납입액을 상위 25%, 중위수, 하위 25%를 중심으로 하여 분위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25%를 중심으로 실시한 분위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변수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하고 자산 역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위수 50% 기준 분위회귀 분석 결과의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상위 75% 기준 분위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소득변수만 유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세 분위회귀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모형1을 예외로 하면, 개인연금 가입금액이 다른 세 집단에 대해 각 집단의 개인연금 납부액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 납부액의 탄력성(회귀계수의 절대값)과 자산에 대한 개인연금의 탄력성(회귀계수의 절대값)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모형에서 추정될 결과를 중심으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37) 소득수준별로 개인연금 가입금액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가입액의 분산에도 차이가 있다.

〈표 V-9〉 모형별 · 납부수준별 연금가입 요인분석(Quantile regression)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QR 25	QR 50	QR 75	QR 25	QR 50	QR 75	QR 25	QR 50	QR 75
소득의 로그값	0.163	0.410***	0.130*	0.485*	0.347***	0.134**	0.445**	0.369***	0.183***
금융자산의 로그값	0.296***	0.094**	0.035	0.211**	0.090**	0.033	0.211**	0.094**	0.043**
가구원수	-0.113	-0.037	-0.001	—	—	—	—	—	—
연령	0.19	0.066	0.005	0.004	0.008	0.003	—	—	—
연령제곱	-0.002	-0.001	0	—	—	—	—	—	—
성디미 (남자:1)	0.354	0.089	0.059	0.019	0.129	0.057	—	—	—
결혼여부 (기혼:1)	-0.579	-0.402	-0.017	-0.588	-0.444	-0.019	—	—	—
교육연수	0.022	-0.015	0	—	—	—	—	—	—
근로형태 (임금:1)	-0.035	-0.023	0.121	-0.035	0.01	0.124	—	—	—
지역 (도시:1)	0.17	-0.204	0.14	—	—	—	—	—	—
상수	-3.138	0.387	3.981***	-0.571	1.757**	4.139***	-0.591	1.594**	3.937***

주: 1) QR 25, QR 50, QR 75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때 납부액 수준이 각 각 전체의 25%, 50%, 75%에 존재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분위회귀를 실시했을 때 결과를 의미함.

〈표 V-9〉의 모형1을 중심으로 각 개인연금 납부 분위별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 납부액 탄력성을 살펴보면, 납부금액 수준이 낮은 계층(하위 25% 계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는 하였지만, 납부금액 수준이 중간계층(50% 계층)보다는 낮고 고액의 납부계층(상위 25% 계층)에 비해서는 납부액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개인연금 납부금액이 적은 집단에서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개인연금 저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확률이 중위소득보다는 낮으나 고소득층 보다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연금 납부금액이 중위수 수준인 계층에서는 납부금액이 적은 집단(하위 25% 계층)과 고액의 납부계층(상위 25% 계층) 보다 납부액 탄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연금 납부액이 적은 계층 혹은 많은 계층에 비해 납부액이 중간정도인 계층이 정책 변화에 민감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정책변화 시 납입액이 중간정도인 계층의 반응에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납부금액이 상위 75%인 계층에서의 소득탄력성은 다른 집단보다 낮은 납부액 탄력성을 보여, 소득 변화가 있더라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개인연금 저축액을 변화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모형의 강건성 검증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계수와 최소필요 변수를 중심으로 수행한 분위회귀분석 결과는 모형2, 모형3과 같다. 분석결과는 모형2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정리하면, 분위회귀에서 모든 집단에서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 납부액은 양의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 납부액 규모가 큰 집단일수록 그 탄력성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는 개인연금 납부액 규모와 소득수준의 상관도가 높다고 가정하면, 저소득층은 납부액 탄력성이 높고 고소득층은 납부액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최근의 연금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고 고소득층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은 보다 큰 가입유인과 납부액 증가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가입유인이 위축될 것이지만 탄력성이 낮아 그 위축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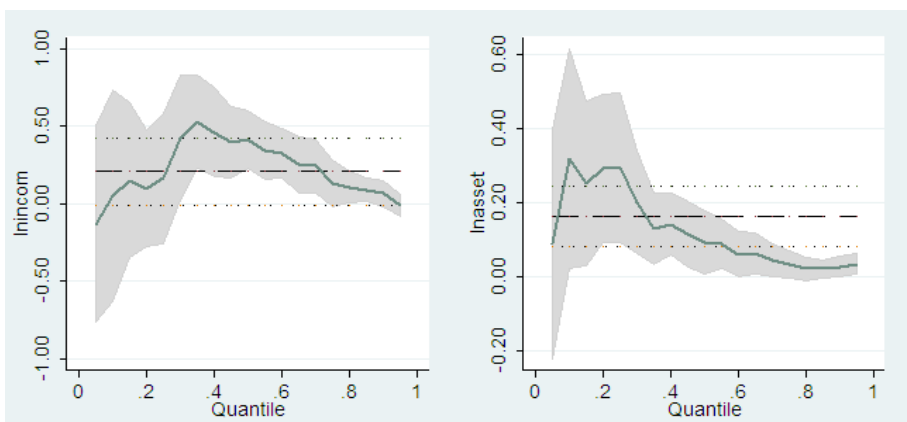
〈그림 V-1〉은 각 분위별 분위회귀 실행결과를 이용하여 각 분위별로 설명변수의 계수값(탄력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의 굵은 점선과 그 양측 주위의 얇은 점선은 최소자승법(OLS)을 실시하였을 때의 계수의 값과 95% 신뢰구간을 의미하는데, 소득($\ln \text{incom}$)과 금융자산($\ln \text{asset}$)의 경우 일반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 회귀식의 계수값(탄력성)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평균을 기준으로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해 추정한 계수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값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의 최소자승법

(OLS)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추정값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선은 각 분위별로 해당 변수가 가지는 계수값(탄력성)을 나타낸 것이고 음영 처리된 부분은 각 분위별로 추정된 계수값(탄력성)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소득(Inincom)의 경우 개인연금 납입금액이 아주 적은 계층에서는 회귀계수값(탄력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납입금액이 많은 계층에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의 회귀계수값(탄력성)이 크고 납입금액의 수준이 일정 분위 이상이 되면 다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세제혜택을 통해서 개인연금가입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계층은 개인연금납입액 수준이 중간(혹은 중산층) 정도임을 뜻한다. 만약 정부의 정책목표가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계층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개인연금 가입과 가입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지원은 개인연금가입액이 많지 않으면서 개인연금가입액에 대한 가처분소득 증가의 탄력성이 높은 그룹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를 소득수준과 연관시켜 해석한다면, 앞서 기술통계에서 언급한 대로 개인연금 가입액과 소득과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림 V-1〉 개인연금납부액 분위별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값(탄력성) 비교



주: 소득과 금융자산에 대한 회귀계수에 대한 내용만을 대표로 제시함.

나.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재정효과 분석

여기에서는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라 나타날 조세지출 변화효과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최근 연금과세체계 개편은 평균적으로 조세지출을 감소시켜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금과세 개편의 효과가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면서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재정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앞의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모형에서 추정된 소득의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소득변화율에 따른 개인연금 납부액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전체 소득계층별 재정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분위회귀 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분위회귀 모형은 소득을 기준으로 분위기를 구분한 것이 아니고, 종속변수인 개인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분위기를 구분한 것이므로 소득계층별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납부액과 가처분소득 간의 상관성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 납부액과 가처분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연금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의 개인연금납입액을 조사하였다.

〈표 V-10〉 개인연금 가입자 소득분위별 가입금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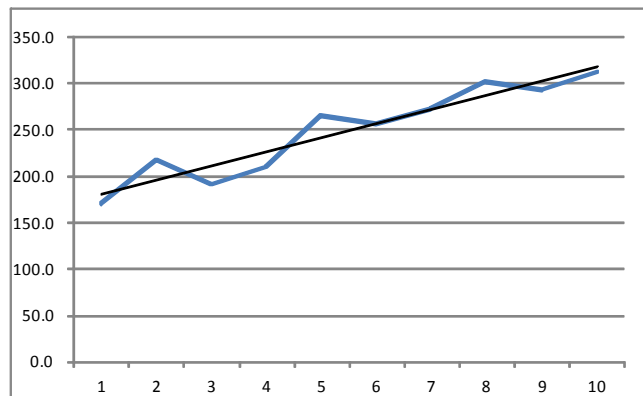
소득분위	평균가처분소득	평균가입금액
1	1602.6	170.8
2	3233.9	217.6
3	4244.3	191.2
4	5026.4	209.2
5	5691.1	264.9
6	6294.5	256.2
7	7068.9	273.1
8	8064.9	301.6
9	9376.4	292.5
10	12821.9	311.4

주: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별로 나눈 것임.

〈표 V-10〉과 〈그림 V-2〉에서 보듯이 소득수준과 개인연금 가입금액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개인연금 가입자의 소득분위와 가입액 간의 관계

(단위: 만 원, 분위)



주: 수평축은 가입자의 소득분위이고 수직축은 개인연금 납입액.

개인연금 납부액과 소득의 상관관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분위별로 빈도수가 많지 않아 명확한 관계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연금 보험료액수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두 변수 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연금 납부액 분위는 소득분위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은 개인연금 가입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 <표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분위별로 빈도수가 많지 않아 명확한 관계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연금 보험료액수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두 변수 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11〉 소득과 개인연금보험료의 관계

(단위: 가구, %)

개인연금보험료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전체
1분위	빈도	9	3	0	1	13
	비율	69.2%	23.1%	0.0%	7.7%	100.0%
2분위	빈도	13	7	1	5	26
	비율	50.0%	26.9%	3.8%	19.2%	100.0%
3분위	빈도	32	18	27	4	81
	비율	39.5%	22.2%	33.3%	4.9%	100.0%
4분위	빈도	52	54	66	84	256
	비율	20.3%	21.1%	25.8%	32.8%	100.0%
전체	빈도	106	82	94	94	376
	비율	28.2%	21.8%	25.0%	25.0%	100.0%

주: 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사업소득으로, 개인연금보험료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해 금액 서열로 각각 25%범위에서 구분하였음(1분위는 하위 25%, 4분위는 상위 25%의 평균임).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분위회귀 모형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납부액과 소득 간에는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분위회귀 모형의 특성상 종속변수인 개인연금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분위기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소득 계층별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분위회귀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평균적 납부액을 산출하고, 동 납부액을 기준으로 분

위회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분위회귀를 수행하기 위한 납부액은 서열화되어야 하므로 납부액의 평균액이 전체 납부액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의 평균과 서열비율을 산출하면 다음 <표 V-12>와 같다. 이에 의하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은 각각 연간 128만 원, 200만 원, 266만 원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 값의 서열을 비율화하여 살펴보면 각각 29.6%, 38.4%, 64.9%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2>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의 평균과 서열비율

(단위: 만 원, %)

소득계층	연평균 납부액 (mean) ¹⁾	평균의 서열비율 ²⁾	연평균 소득 ³⁾
저소득층	128	29.6	718 (755)
중산층	200	38.4	2,778 (2,451)
고소득층	266	64.9	7,117 (6,507)
전체	247	47.0	5,936 (3,286)

주: 1)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간 납부액의 소득계층별 산술평균임(mean).

2) 평균의 서열비율은 분위회귀를 산출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평균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임.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평균 가입자는 납부금액이 낮은 자에서 높은 자 순서로 서열화 하였을 때 약 30번째 위치한다는 의미임.

3) 개인연금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평균소득임. ()안은 미가입자까지 포함한 전체 소득계층별 연평균 소득임.

이제 각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과 서열비율을 활용하여 분위회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분위회귀 모형과 해석상 차이는 없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모든 모형에서 저소득층 소득의 로그값 변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계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13〉 모형별 · 소득계층별 연금가입 요인분석(Quantile regression)

설명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소득의 로그값	0.424**	0.498***	0.377***	0.483**	0.532***	0.358***	0.491***	0.602***	0.384***
금융자산 의 로그값	0.201***	0.141**	0.107**	0.189***	0.136**	0.102***	0.204***	0.144***	0.099**
가구원수	0.009	-0.004	-0.033	—	—	—	—	—	—
연령	0.085	0.064	0.075	0.004	0.008	0.008	—	—	—
연령제곱	-0.001	-0.001	-0.001	—	—	—	—	—	—
성더미 (남자:1)	0.132	0.289	0.113	0.012	0.172	0.139	—	—	—
결혼여부 (기혼:1)	-0.698	-0.685	-0.431	-0.597	-0.614	-0.502*	—	—	—
교육연수	0.011	0.008	0.001	—	—	—	—	—	—
근로형태 (임금:1)	0.044	0.104	-0.025	0.059	0.193	0.027	—	—	—
지역 (도시:1)	-0.378	-0.225	-0.214	—	—	—	—	—	—
상수	-1.623	-1.358	0.135	-0.321	-0.542	1.533**	-0.815	-1.096	1.404*

이제 분위회귀 계수와 소득계층별 특성을 이용하여 연금과세의 재정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금세제 개편 이전의 개인연금 가입액을 기준으로 연금과세 개편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액 변화를 고려하여 소득변화율을 산출한다. 여기서 소득변화율을 고려하는 이유는 분위회귀 모형에서 산출한 회귀계수(탄력성)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소득변화율이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경우의 소득계층별 재정효과를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응용하여 국세통계연보 상 도출된 소득변화율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날 재정효과에 대해 대해서도 분석한다.

둘째, 연금과세 개편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될 가처분소득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개인연금 납부액 변화를 통해 납부액 변화율을 산출한다.

셋째, 연금과세 개편 전후의 평균소득액과 납부액 변화분을 각 분위별로 산출하여 각 분위별 소득변화 및 납부액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넷째, 재정효과 산출을 위해 모든 가입자의 납부액 변화를 합산하여 연금과세 개편에 따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산출방법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서는 분위회귀 모형1에서 추정한 분위회귀계수를 활용하여 재정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연금 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소득(가구주의 근로 +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718만 원, 중산층 2,778만 원, 고소득층 7,11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의 소득계층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ECD 기준에 의한 소득계층 구분이며, 이들 중 개인연금 납부액이 존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편, OECD 기준에 의한 소득계층 구분은 상대적 방식이므로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한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는 저소득층과 구분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므로 국세통계연보상 자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세제 개편으로 모든 소득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동일하게 1%씩 증가한다고 가정 할 때(여기서는 소득변화율 1%) 개인연금 납부액과 재정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1에 의하면, 소득이 1% 증가할 때 개인연금 납부액은 각 집단별 계수인 탄력성만큼 증가하여 저소득층은 0.424%, 중산층은 0.498%, 고소득층은 0.377%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개인연금 1인당 연간 납부액 변화는 저소득층 0.54만 원, 중산층 1.00만 원, 고소득층은 1.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상자³⁸⁾ 수를 적용하면, 소득계층별 연간 총납부액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439백만 원, 중산층은 7,615백만 원, 고소득층은 24,083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8) 대상자 수는 국세통계연보(2012)에서 조사된 개인연금 납부자 3,247천 명을 본 연구에서 산출한 소득계층별 납부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표 V-14〉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변화 효과(모형1 기준)

(단위: 만 원, 백만 원, %)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소득변화율(가정)	1.00%	1.00%	1.00%
소득의 로그값 계수 ¹⁾	0.424	0.498	0.377
개정전평균소득(만 원)	718	2,778	7,117
개정전개인연금평균납부액(만 원)	128	200	266
개인연금납부액변화율	0.424%	0.498%	0.377%
평균소득변화액(만 원)	7.18	27.78	71.17
개인연금납부액변화액(만 원)	0.54	1.00	1.00
대상자수(천 명) ²⁾	81	765	2,402
총납부액변화액(백만 원)	439	7,615	24,083

주: 1) 소득의 로그값 계수는 분위회귀 모형에서 분위 25%, 50%, 75%의 회귀 계수를 각각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평균적 회귀계수 값으로 가정함.

2) 대상자 수는 국세통계연보(2012)에서 조사된 개인연금 납부자 3,247천 명을 본 연구에서 산출한 소득계층별 납부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이제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재정효과(조세지출 효과)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여기서 재정효과는 소득공제 시 조세지출과 세액공제 시 조세지출의 차이로서 살펴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조세지출이 증가(감소)하면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에 의하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연금과세체계 변화는 전체적으로 조세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국가재정은 63,549백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소득공제율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커서 조세지출이 증가하여 재정효과는 △7,513백만 원, △72,779백만 원 정도 감소하며, 고소득층은 세액공제율의 적용으로 조세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효과는 △143,842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V-15〉 소득계층별 재정(조세지출) 효과(모형1 기준)

(단위: 만 원, 백만 원, %)

구분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소득 공제	소득공제율(유효세율) ¹⁾	4.80%	7.30%	14.30%
	조세지출액(백만 원) ²⁾	4,974	111,621	913,297
	조세지출액 계(백만 원)	1,029,892		
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12.00%	12.00%	12.00%
	조세지출액(백만 원) ³⁾	12,487	184,401	769,455
	조세지출액 계(백만 원)	966,343		
개정효과(백만 원) ⁴⁾		-7,513	-72,779	143,842
개정효과 계(백만 원)		63,549		

주: 1) 소득공제율은 제2장의 '〈표 II-12〉 소득유형별 유효세율'에서 과세표준소득 구간인 3천만 원 이하(저소득), 3천만 원초 과~6천만 원 이하(중산층), 6천만 원 초과소득 집단(고소득층)의 유효세율을 활용함. 단 고소득층은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

2) 조세지출액(소득공제)=개정전개인연금평균납부액×대상자수×소득공제율

3) 조세지출액(세액공제)=(개정전개인연금평균납부액+개인연금납부액변화액)×대상자수×세액공제율

4) 개정효과 = 조세지출액(소득공제)-조세지출액(세액공제)

5) 기본 가정은 위 분석내용과 동일함.

정리하면, 동일한 소득변화율을 모든 계층에 적용할 경우에 탄력성 효과에 의해 개인연금 납부액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중산층에서의 납부액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단위당 납부액변화율이 중산층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표 V-3〉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개인연금 가입자 수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총 납부액 변화와 이로 인한 조세지출 변화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고소득층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 모형에 의한 최종적인 세제개편 효과는 고소득층의 규모의 효과로 인해 조세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은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가 나타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논리로 모형 2, 3에 대해서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모형 1과 비교할 때 해석상 큰 차이는 없으나, 모형 2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소득탄력성계수(소득의 로그값 계수)가 모형 1에 비해 크고, 모형 3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탄력성 계수가 모형 1에 비해 커서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인 해석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³⁹⁾

그러나, 동 분석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소득이 1%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분석이므로 현실적인 연금과세체계 개편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현행 연금과세체계 개편방향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시 조세지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으로 인해 소득변화율은 저소득층 2.55%, 중산층 0.57%, 고소득층 -0.10%로 산출되었다. 동 소득변화율은 각 소득계층과 제2장에서 구분한 과세표준소득 구간인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소득 집단과 근사하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의 연금 세제 변화에 따른 소득변화율은 제2장에서 분석한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소득 집단의 소득변화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소득변화율의 영향을 받아 값이 변화하는 연금납부액변화율, 평균소득변화액, 개인연금납부액 변화액, 총납부액 변화액, 조세지출 변화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앞의 표에서 제시한 값과 일치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표를 구성하면 다음 <표 V-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모형별로 조세지출 변화가 달리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는 조세지출이 증가(가처분소득 증가)하고, 고소득층에서는 조세지출이 감소(가처분소득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1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연금세법 개정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총 세제지원 액은 각각 75억9천 5백만 원, 723억 9천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소득층은 1,470억 7백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과세체계 변화로 인해 과세형평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총조세지출 감소액은 670억 2천 2백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39) 동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은 <부록> 참고.

〈표 V-16〉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조세지출 효과(모형1~3 기준)

(단위: 만 원, 백만 원, %)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소득변화율		2.55%	0.57%	-0.10%
연금납부액변화율 (%)	모형1	1.082%	0.286%	-0.036%
	모형2	1.232%	0.305%	-0.034%
	모형3	1.252%	0.346%	-0.037%
평균소득변화액(만 원)		18.31	15.95	-6.78
개인연금납부액 변화액(만 원)	모형1	1.38	0.57	-0.10
	모형2	1.58	0.61	-0.09
	모형3	1.60	0.69	-0.10
총납부액변화액 (백만 원)	모형1(3,197)	1,121	4,372	-2,295
	모형2(3,767)	1,277	4,670	-2,179
	모형3(4,245)	1,298	5,285	-2,337
개정효과 (백만 원)	모형1(67,022)	-7,595	-72,390	147,007
	모형2(66,954)	-7,614	-72,426	146,993
	모형3(66,896)	-7,616	-72,500	147,012

VI. 개정 세액공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최근 연금과세체계 개편은 복지재원 마련과 함께 과세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과세원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득계층별로 지원효과를 볼 때도 과거에 비해 고소득층이 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감소하여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최근의 연금과세 개편 방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할 때, 향후 연금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정책제언은 연금과세체계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제2장 참고) 중에서 최근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정책제언은 일반화된 개인연금의 활성화 전략이라기보다는 연금보험료 과세 체계 변화를 조건으로 한 개인연금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겠다.

첫째, 소득계층별 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및 유지에 대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소득계층별 가입탄력성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세액공제율을 달리하더라도 개인연금 가입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연금 가입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라고 하겠다.

동 방안이 현실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총조세지출 규모가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계층별 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부

답이 되지 않으면서 과세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 중인 세액공제율은 모든 소득계층에 12%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공제율을 각각 15%, 12%, 9% 정도로 한다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소득계층으로 지원이 되어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함으로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는 연금과세체계가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의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므로 연금과세 개편으로 소득수준이 감소하더라도 탈퇴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는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도 현실적으로 탈퇴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 등 저소득 계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혹은 매우 적은 세금을 납부하므로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연금가입률 및 가입액의 제고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는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최대 수혜자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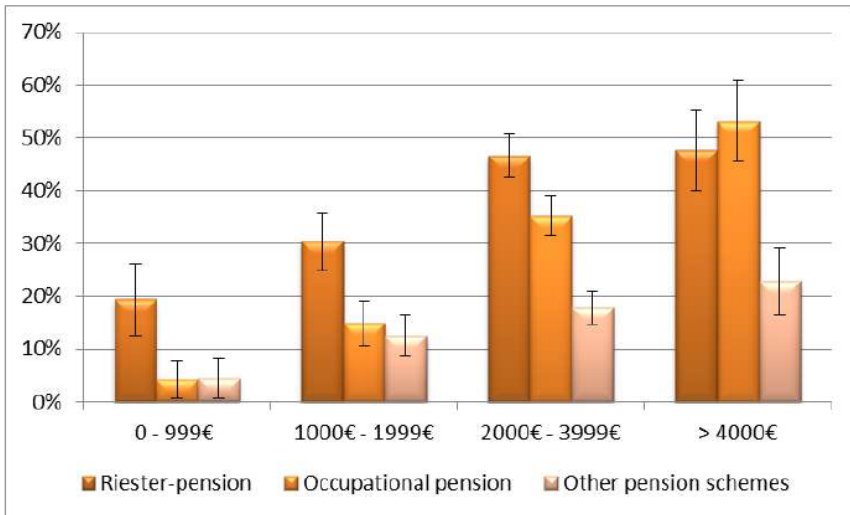
한편, 최근 연금 세제 개혁과 관련하여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공제에 따른 수혜도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적용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와 과세형평성이라는 국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었고, 이러한 국가 정책이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가입에 대한 과감한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연금 납부액 증가폭이 커서 동일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유인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효과 측면에서도 연금과세체계 개편으로 고

소득층에서 들어오는 연금과세 수입의 일부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정적 추가적인 지출 없이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개인연금가입률 및 가입액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수준의 지원이 아닌 독일의 리스터 연금처럼 보조금형태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1〉 독일의 가처분소득 수준별 연금상품 가입률



자료: Axel H. Borsch-Supan et al, Rister Pension in Germany: Design, Dynamics, Targeting Success and Crowding-In, (2012).

〈그림 VI-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처분 소득이 1,000유로 이하인 가구의 경우 약 20%가 리스터 연금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동일 소득수준에서 퇴직연금 혹은 여타 연금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가입률이라 하겠다. 소득이 증가 할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리스터 연금 가입률의 증가분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고소득층은 적은 수준의 보조금 혹은 소득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사례를 미루어 생각할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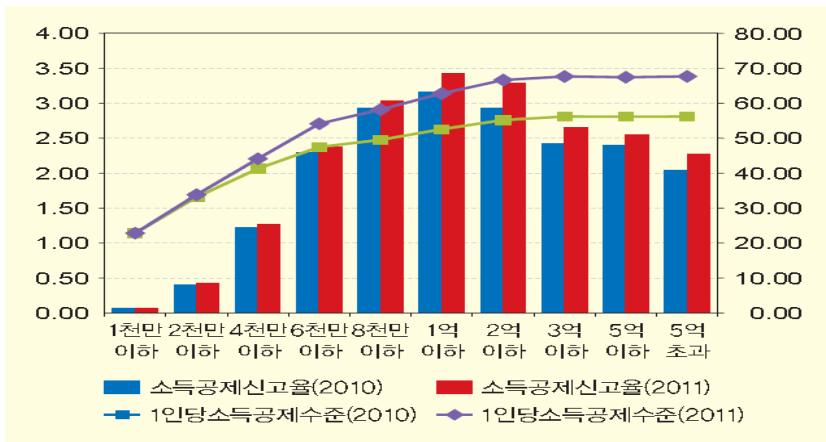
노후보장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저소득층의 추가적 노후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OECD 국가의 개인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과 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제 상한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 400만 원 소득공제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를 늘리게 되면 과세형평성을 다시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하는 복합전략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주요국의 것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물론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선진국의 개인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선진국 모형을 쫓아 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개편 혹은 공제상한 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공제상한 조정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전략을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와 관련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위회귀 결과를 보면 중산층의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의 수요 탄력성이 가장 높고, 고소득층은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소득공제 한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면, 고소득층은 이미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워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은 개인연금 등 장기저축의 증가 보다는 소비 혹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림 VI-2>에서 보듯이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하였을 때 고소득층의 개인연금 납입액이 400만 원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VI-2〉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연금 가입액에 미치는 영향



자료: 윤성주(2012).

그렇다면 고소득층의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한도액인 400만 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즉, 과세형평성과 조세지출액 감소를 고려하여,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되, 현행 보험료 소득공제액 수준인 400만 원 이상(예, 600만 원 혹은 800만 원 등)에서 세액공제 한도액을 설정한다면, 고소득 가입자에게도 납입액 증액의 동기를 주면서도 정부의 재정부담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금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재정안정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한다면 최저 4.4%까지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개인연금 가입 시에는 세제혜택이 따르나 가입 후 5년 이하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가 부가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 4.4% 수준이다. 이는 정책적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선이 가입과 탈퇴의 한계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액공제 수준 12%의 하한은 4.4%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4.4% 수준으로 당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한다면 세제 효율화 측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소득공제율을 달리하지만 해당 집단별 최소 공제율은 4.4%선으로 한다면, 재정안정화와 과세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금과

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연금과세체계 개편이 이루어져 여유재원 발생 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 세액공제율 12%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확보된 재원은 고령화 및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제와 개인연금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VII. 결론 및 시사점

OECD 최고수준의 극심한 노후 빈곤을 해결을 위해 이번 정부들어 추진되고 있는 국민행복 연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를 잘하지 못했을 때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정부의 재정소요를 일으키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을 통한 두터운 노후의 재정적 보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소득공제 방식의 개인연금 지원책은 지원의 역진성문제와 그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개인연금)에 대한 지원방식을 조사해본 결과 많은 나라들이 직접적인 보조금 혹은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직접적인 보조금 형태를 이용한 독일의 경우 소득공제방식을 이용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개인연금 가입률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기존 소득공제제도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연금 가입률 및 가입액 수준을 제고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덜고자 하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중·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고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증가 혹은 감소된 가처분 소득이 개인연금가입률 및 가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결과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의 탄력성은 중상 위층이 가장 탄력적이어서 세액공제로 인한

개인연금납입의 변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큰 변화가 없고, 중간층의 개인연금가입률과 납입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위회귀분석 결과와 국세통계 연보를 이용한 개인연금 가입액 증가와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모의실험해 본 결과 각 가구별 절대액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분과 그에 따른 개인연금가입액 증가분이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 감소분 및 개인연금 가입액 감소분 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개인연금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한 정책 제안으로는 첫째, 은행권의 재형저축상품 처럼 저소득층에 대해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 혹은 공제율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유인을 극대화할 것, 둘째로는 세제혜택으로는 가입률 및 가입액의 제고가 어려운 계층을 표적으로 한 과감한 보조금제도를 도입할 것, 셋째로는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대비 낮은 수준의 공제한도를 높여 주어 개인연금전체 시장을 활성화해주되, 지나친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4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4.4%의 최저 공제율을 조금 넘는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소득층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여 발생하는 조세지출 감소분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노후보장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노후빈곤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와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노후보장의 가장 바람직한 주체는 나라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의 GDP 대비 비중은 2012년 현재 16%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공적연금의 비중은 GDP 대비 34.4%로 노후를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오진호 외 2명, 2013). 한편, OECD 국가 중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있어 공적부분의 비중이 더 큰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

국⁴⁰⁾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개인연금의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절실한 과제라 하겠다.

40) 벨기에, 프랑스, 일본, 스웨덴.

참고문헌

- 강성호 · 권혁진 · 조영은(2012),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보장과 소득재
분배 효과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 강성호 · 정원석(2013), 「우리나라 연금과세체계와 연금세제 개편방향」,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구성권(2008. 9), 「연금세제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한
국경영컨설팅학회, Vol. 8 No. 3.
- 국민연금연구원(2011. 4), 「OECD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동향」.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 11. 14), 「연금저축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
비하세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2. 4. 4),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 김수성(2010),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조세
연구』, 제10-1집.
- 김용주 외(2008. 9),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향」, 보
험개발원.
- 김용주 · 안종범 · 양성문 · 신상환 · 이충심(2008),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 김인식 · 류건식 · 김대환(2011), 「퇴직연금 세제체계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30권.
- 류건식(2011. 4),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안」,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_____(2011. 7), 「주간포커스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_____(2012. 7), 「복지국가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KIIRI Weekly』, 보
험연구원.

류건식·이상우(2008),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향」,
『KIIRI Weekly』, 보험연구원, pp. 4.

_____ (2011. 12),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안」,
『KIIRI Weekly』, 보험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은퇴와 연금」, January No. 58.

보험연구원 내부자료(2013).

연금제도연구실(2011), 「공사적 연금제도」, 국민연금연구원.

오진호·임두빈·전용일(2013),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와 향후전망」, 『연금연구』, 한국연금학회, 제3권 제1호.

윤성주(2013),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월간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제199호, pp. 6~22.

정요섭·이정화(2008),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
『리스크 관리연구』, 제19권, 제1호.

주은선(2012), 「해외 공·사연금제도(스웨덴)」, 국민연금연구원, pp. 52~53.

황규영(2009.12), 「국민연금의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제26권 제4호.

Axel H. Borsch-Supan, Michela Coppola, Anette Reil-Held(2012), Rister Pension in Germany: Design, Dynamics, Targetting Success and Crowding-In, NBER Working Paper 1801.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谷内陽一(2009), 私的年金税制の公平性・中立性に関する一考察, 早稲田大学.

일본내각부(<http://www.cao.go.jp/zeicho/siryou/pdf/kiso12c.pdf>)

일본재무성(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73.htm)

부 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하에서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

앞서 가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반함수 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정할 경우 효용함수와 예산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가정 할 수 있다.

$$\begin{aligned} \max U(x, y) \\ s.t. \quad x + \frac{y}{1+r} = (1-t)I + t\frac{y}{1+r} \end{aligned}$$

예산 제약식에서 좌변은 현재의 소비와 미래소비의 현재 가치를 합한 생애 총 소비이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의 가치분 소득이고 두 번째 항은 미래소비로 이전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부분을 합친 생애 총 소득이다. 상기 문제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풀면

$$MRS_{x,y} = \frac{MU_x}{MU_y} = \frac{1+r}{1-t}$$

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소득공제와 이자율을 고려한 1기와 2기의 각 기의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각 기의 소비수준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자율(r) 이 올라갈수록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세율이 높아질수록 가치분 소득 중 미래의 소비를 늘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Cubb-douglas 함수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정하여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다.

$$\max U(x, y) = Ax^{1-\beta}y^\beta$$

$$s.t. \quad x + \frac{y}{1+r} = (1-t)I + t\frac{y}{1+r}$$

소득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실효세율 $t(I)$ 는 소득(I)에 대한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풀면,

$x_R^* = (1-\beta)I(1-t)$ 그리고 $y_R^* = \beta I(1+r)(1-t)$ 의 결과를 얻는다. 이는 위에서 일반함수로 얻은 해 조건과 같은 성질들을 만족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함수형태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max U(x, y)$$

$$s.t. \quad x + \frac{y}{1+r} = (1-t)I + a\frac{y}{1+r}$$

소득공제제도와 동일한 특성을 만족하는 효용함수를 가정하며, 소득공제 제도에서의 예산제약식과 다른 부분은 우변에서 두 번째 항의 미래소비에 대한 공제율이 세율대신 정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a 값이라는 점만 다르다고 하겠다. 이 경우 최적화 문제를 풀면,

$$MRS_{x,y} = \frac{MU_x}{MU_y} = \frac{1+r}{1-a}$$

1기와 2기의 이자율과 세액공제율을 고려한 한계효용의 비율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1기와 2기의 소비수준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이자율과 세액공제율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세액공제율 a 가 커질수록 미래소비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만약,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Cobb-douglas 함수형태를 가정하여 최적화 문제를 풀면, 효용함수와 예산제약 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max U(x, y) &= Ax^{1-\beta}y^\beta \\ \text{s.t. } x + \frac{y}{1+r} &= (1-t)I + a\frac{y}{1+r} \end{aligned}$$

이 경우 실효 세율은 소득에 따른 세율에 소득을 곱한 세액 $t(I)^*$ 에서 세액공제분 ay 를 차감한 값을 전체 소득 I 로 나눈 값이 되어 세액공제 시 실효율의 함수는

$$t^c = \frac{I^*t(I) - ay}{I} \text{가 된다(소득공제 시 실효세율의 함수는 } t^R = \frac{I^*t(I) - t(I)y}{I} \text{).}$$

주어진 조건에서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면,

$$x_C^* = (1-\beta)I(1-t) \text{ 그리고 } y_C^* = \beta \frac{I}{1-a}(1+r)(1-t) \text{ 가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적 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으나 본고에서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유효세율을 낮추어 준다는 점을 강조하여 앞서 본문과 같이 기술하였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정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정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정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량 2014.3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⑩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1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정 원 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강 성 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이 상 우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일본 중앙대 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swlee@kiri.or.kr)

조사보고서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4년 4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01-5

정가 10,000원